

# 인권아루소식

합본 19호

2002년  
7월 ~ 12월



##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19

사  
랑  
방

(월간2회 발행, 일·월요일 제외)

# 인권아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02-741-5365

##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한창이다. 특히 올해가 4·3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논의와 자기 진행되고 있다.

자실상 4·3에 대한 논의가 폐금된 87년 6월 학생 이후, 그전까지 4·3은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였고, 학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원으로 분출된 민주화 연기는 4·3 학살규명작업을 본격화시켰고, 그 직후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거제만 10여 년간의 주춧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설과 미지로 묵어 있다.

# 인권아루소식

제2125호 ~ 제2246호

합본 19호  
(2002년 7월 ~ 12월)

인권운동사랑방

## 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 흐름과 쟁점

#### 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 (8. 20),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은 70년대 전향공작 중 폭행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8. 30) 그러나 가해기관들의 '배째라'식 태도는 진상규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기무사도 의문사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했다. (8. 7, 8. 21) 노동자 문용섭 사건 담당 검사였던 명동성 씨는 두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8. 8),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 당시 최고통수권자인 전두환 씨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8. 10) 한편, 녹화사업 담당 보안사 과장이었던 서의남 씨는 '관련 자료를 소각했다'고 통보한 후 아예 잠적해 버렸다. (8. 26)

#### 2. 듣고 있는가? 과거청산의 절절한 요구를...

계승연대 등은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조항 삭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촉구하고 (8. 20),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8. 30) 의문사위 자문위원들 역시 같은 취지의 법개정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8. 21) 이러한 흐름을 타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가인권위는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를 열었고,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8. 26) 한편,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를 결성,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역 목요 거점 투쟁에 돌입했다. (8. 29)

#### 3. 이명박 서울시장 사전에 '사과'란 없는가?

발산역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목숨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7. 29) 이에 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서울시에 발산역 참사에 대한 공개 사과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돌입했다. (8. 12) 13개 인권단체들은 이동권연대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8. 20), 그 중 5개 인권단체들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8. 26) 이 시장은 △발산역 사고 사망자의 장례식장을 방문했고 △'휠체어콜택시' 도입 등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8. 28) 하지만 이동권연대는 '시장후보로서 행한 조문과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들어가 발산역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8. 29)

#### 4. 노동자·서민 죽이기 용병, 용역깡패

용역깡패(사설경비)들이 공권력과 기업의 묵인 하에 노동자와 서민을 곳곳에서 물리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민국당 강숙자 의원)이 소유한 서울온천에 용역경비들이 난입, 농성 중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7. 13) 제주 한라병원 역시 경비용역업체를 동원, 파업을 벌여온 노조원을 폭행하며 강제로 끌어냈다. (8. 25) 청계천에서 공구를 파는 노점상 박봉규 씨는 8월 한달 동안 3차례나 단속을 당하자, 서울 중구청에서 분신으로 항의했다. (8. 23) 인근 상인들은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 때도 용역깡패가 동원됐다고 말했다. (8. 28)

### 논평

- 주체사상을 치별하지 말라 (8. 3)
- 사면의 역설 (8. 10)
-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8. 24)
- 의문사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된다 (8. 31)

### 인권이야기

-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8. 6/윤현식)
-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8. 13/진영종)
-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8. 20/윤현식)
- 어느 사형수 이야기 (8. 27/정귀순)

### 인권정보자료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8. 8)
- 「서준식 옥중서한 1971-1988」 (8. 15)
- 「유엔과 인권 꾸러미」 (8. 22)
-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8. 28)

### 기획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8. 7)
- (6) 금정굴 학살,
  - "부역자 가족은 쌔를 말려야 한다" (8. 14)
  - (7) 산청 학살, "지리산 자리에 산 게 죄였다" (8. 22)
  - (8) 청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 이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8. 28)

### 기고

-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양심에 따른
-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8. 8/오태양)
-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8. 10/김병수)

### 중요 판결 및 결정

- 부산지법 민사6부, 학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숨진 학생의 부모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 (8. 1) / · 국가인권위, 외국인 추방 시 구제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출입국관리소에 권고 (8. 13) / ·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8. 9) / · 서울지법, 선천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체벌로 초등학생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해당기관에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 (8. 12) / · 행정법원, '회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판결 (8. 14) / · 행정법원, '이 웹커뮤니티 엑스존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 기각 (8. 14)

# 인권하루소식

## 2002년 9월

## (제2167호 ~ 제2184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9월 3일(화)

제 21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불법체류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목사는 "안산 지역에서 오늘까지 5차례나 단속이 진행됐다"라며 "오늘도 신원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버스에) 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달 29일 낮 2시경 안산역에서 있었던 무차별 연행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단속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 중에는 산재당한 발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사람, 사장의 '빗자루 구타'로 전날 상담했던 사람들, 지난 3~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게끔 되어 있다"며, "여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의 자유는 '신원확인'이라는 행정적 편의 아래 침해되고 있는 것.

9월 11일까지는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이후 9월 말까지는 출입국관리소 차원의 집중단속이 계속된다. 단속대상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

회사를 다른 곳으로 신고한 사람 △자진신고 후 회사를 바꾼 사람 △자진신고하고 배포나 비행기표가 없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도 내년 3월 31일까지 전원 출국 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박 목사는 "지금과 같이 하면 자진신고한 사람의 70~80%가 이미 단속 대상"이라며 "자진신고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자진신고 당시 사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장각서를 써주지 않아 회사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으로 신고한 사람이 많았고, 자진신고 후에도 사용주들의 폭행·임금체불 등에 의해 회사를 뛰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2일 경기도 마석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경찰·전경 등이 합동으로 비두 씨 집을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14명을 연행한 후 비두, 꼬벌 씨를 뱐 12명을 풀어줬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송수진 씨는 "풀어준 사람 중에는 (자진신고 때)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있었다" ([2면에서 계속](#))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밝힙니다

오는 7일부터 매달 한번씩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인권영화 정기상영회-반딧불'이 시작된다. 일년에 한번, 일주일 정도 열리는 영화제에 참석하는 일은 열성과 긴장을 겸비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몇 번뿐인 관람기회를 놓치기 일쑤. 다른 영화제의 작품들처럼 영화제가 끝나면 잊달아 개봉하는 '상업영화'도 아니니 더욱 그렇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져야 하는 인권영화가 오히려 희귀영화가 되어버린 셈이다. 관람기회를 놓쳐 아쉬워하는 이들을 위해 일부 작품이라도 한번 더 보여주는 정기상영회가 기획됐다.

정기상영회의 이름을 '반딧불'이라고 붙인 것도 이러한 전후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애써 찾아야 보이지만 찾았을 때의 기쁨과 감동이 남다를 것이라는 자찬이 섞인 듯. '반딧불'은 인권운동사랑방의 회원 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이 주체 일꾼으로 나서 행사가 진행된다. 상영회의 이름도 이들이 작명했고 순서 기획을 비롯해 홍보, 진행 그리고 뒤풀이 주선까지 이들이 도맡았다.

올해 연말까지 짜여진 프로그램을 보면 올해 상영되었던 인기작과 화제작들이다. 9월 7일 3시, 6시 아트큐브에서 열리는 첫 만남에서는 <전쟁사진작가>를 상영한다. <전쟁사진작가>는 지난 20년 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 지역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생생한 현장을 필름에 담아 온 미국 사진작가 제임스 나트웨이의 치열한 삶과 내면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로서, 이번 영화제에서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작품이다. 이어 10/17 <아티카의 유령들>, 11/14 <신의 아이들>, 12/7 <붉은 대기>를 상영할 예정이다. '반딧불'에서는 인권영화제의 화제작의 재상영과 함께 해당 분야의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 현안에 대해서 관객들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권 영화를 감상할 손쉬운 배급 통로가 없는 척박한 국내의 현실에서 반딧불의 가치가 더욱 도드라지길 기대한다. [이진영]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23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한번에 100명씩 불려가서 이름을 부르면 '예' 대답했고 호명이 모두 끝나면 돌려보냈다. 49년 7월 22일 대구형무소로 보내진 후에야 내 죄명이 국방경비법 위반이고 15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았다." 48년 11월 군경의 학살을 피해 산에 숨었던 수많은 제주사람 중 한명인 고봉한 씨가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일부 위원과 우의단체들은 수형자들은 재판을 통해 '폭도'로 인정된 사람들이라며 4·3 사건 '희생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제주 4·3연구소' 등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도별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 형무소별로 이를 대부분은 몰살당했다. 최근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형인명부」 공개와 생존자 10명의 증언 등을 통해 지금껏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행방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제주 4·3 사건 기간 동안 두차례 열린 고등군법회의는 각각 '계엄령'과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계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었고 '국방경비법' 역시 당시 미군정에 의해 공포된 바 없는 정체불명의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즉,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 이어 이 교수는 "유죄의 증거가 됐다고 하는 자백들도 강압에 의하거나 혹독한 고문의 결과였음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라며 "수형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 역시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라며 한날에 수백명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도 없이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죄목과 형벌을 고지했다는 수형자들의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자의적 권리판결에 지나지 않는 군법회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주영]

(⇒1면에서 이어짐) 라며 "비두, 꼬빌 씨에 대한 표적 단속"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대해 정부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평했다. 이주지부는 이날 낮 12시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고, 현재 비두, 꼬빌 씨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상태다. (법용)

(이번 주 '인권이야기'는 필자의 사정으로 쉽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1. 의문사위, 마지막 안간힘

의문사진상규명위,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 발부(8.26) / 보안사 서의남씨, '녹화사업 관련자료 소각했다' 밝혀(8.26) → 잡적(8.27) / 의문사위, 86년 부산송도 앞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성수씨 타살 가능성 제시(8.27) / 의문사위, '70년대 장기수 3명, 전향 강요받는 중 폭행당해 사망했다'(8.29) /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권한 강화, 기간연장(8.30)

### 2. 이주노동자 불안의 시대

정부, 안산역에서 마구잡이 이주노동자 단속(8.29) → (9.2) / 정부, 마석에서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 꼬빌과 비두 씨 표적 단속(9.2)

### 3. 미군기지촌, 인신매매·감금 성매매 빨간불

여성단체연합·새움터 등,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열어 한국의 미군 기지촌에 펠리핀과 러시아 등 외국 여성들이 팔려오거나 감금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 고발(8.29)

### 4. 폭력으로 병원을 평정하겠다!

제주 한라병원, 용역깡패 동원, 파업중인 노조원들 폭행하고 끌어내(8.25) / 경찰, 서울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 등 장기파업 병원에 공권력 투입 방침 밝혀(8.27)

### 5. 서울시는 메아리 없는 벽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 돌입(8.26) / 이명박 서울시장, "발산역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 씨 병원에 갔었다", "휠체어 콜택시 도입 방안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대책 강구 중" 보도자료 내(8.28) → 장애인이동권연대, 이에 대해 "기존의 미봉책인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 인양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습시위(8.29)

### 6. 과거를 묻을 순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려(8.26)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돌입(8.29)

7. 기타 :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국유화 방안검토…대처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대부분 실폐(8.25) / 한국노총,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8.2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활용)도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3일을 넘긴 장애인들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5월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해 공식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이제껏 별다른 의견표명을 하지 않고 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렬 소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김 소장은 발산역 추락사고와 관련, "서울시 책임 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사람이 죽은 이상 서울시가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라며, "사과와 피해 보상 등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직업·교육·모든 사회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이 곧 이동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

▷질문: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소장(아래 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장애인이 직업·교육·모든 사회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이 곧 이동권 문제다.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장애인들은 외부의 사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혈관과 같은 문제다.

▷질문: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02년 9월 4일(수)

제 21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야 한다. 물론 현재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 법은 이동권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다. 법을 만들고, 정부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로 바꾼다고 하는데, 저상버스에 드는 추가 비용을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이 참에 아예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유모차를 동반하는 어른이나 노인들, 어린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편집자주 :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주축이 돼,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초안을 준비 중이다. 두 단체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이다.) (⇒2면으로 이어짐)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

#### 『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으랏차차 힘찬 인권이야기』

지은이 : 장수하늘소 / 펴낸곳 : 아이세움 / 2002년 8월 / 73쪽 / 가격 7,500원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궁금증을 품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인권교재가 출판됐다. 이 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 신화, 동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권리의 시각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놓고 있다. 찬찬히 읽어보면, 이 책은 인간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역사를 담아놓은 보물단지 같다. 신들만이 사용하던 불을 인간에게 주고 자신은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노예상태를 거부한 스파르타쿠스, 고부 군부의 학정에 저항해 자기 손으로 권리를 일군 농민들, 거짓된 양심을 고발해 드레퓌스의 무죄를 밝힌 소설가 에밀 졸라, 도청 때문에 쫓겨난 낙수 대통령, 유치원을 처음 만들어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놀고 있는 프로펠, 학대받는 아이들 장화·홍련 등 30여개 인권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레 인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다.

동화작가들의 연구모임 장수하늘소는 이 책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인권을 침해받거나 때로는 자신이 피해를 당할 때, 과감하게 '안 돼' 또는 '안 돼요'라고 외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최은아]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찰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24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3일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은 파업 1백4일째다. 현재 남아있는 핵심쟁점은 징계, 사학연금, 무노동 무임금. 하지만 병원 쪽은 더 이상 한치의 양보도 없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 무노동 무임금 - 애초 병원은 파업을 근무이탈 행위로 보고, 파업 참가자들로부터 매일 상여금의 10%를 벌금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해서 월 2~3백만원의 소위 'マイ너스 월급명세서'가 통지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병원은 '전산착오'라고 변명하면서 파업참가자들의 월급명세서에 0원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현재 병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키면서, 개인 급호, 가족 부양수, 생계의 어려움 정도를 고려, 개인별로 일정액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노조는 많이 양보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병원이 파업기간 중 임금의 50%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학연금 - 현재 사립대학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0%인 본인 부담율을 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관련 동아대병원과 고신의료원은 이미 1백%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고, 이화의료원, 아주대병원, 한양대의료원도 사용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 징계 - 현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고, 직권 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일어나자 불법파업으로 간주하며

노조 쪽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병원의 징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병원파업도 그 동안 몇 번 타결의 기미를 보인 적이 있다. 지난 7월 30일 노조는 '사학연금 문제를 내년에 거론할 수 있다'며, 핵심쟁점 중 하나를 대폭 양보했다. 하지만 병원은 다음날 징계 문제를 거론하며 노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한동안 대화가 진행되지 않다가, 8월 22~24일 노조는 '세 개 병원 지부장에 한해 징계를 수

용하겠다'고 또 다시 양보를 했다. 이에 27일 '징계에는 해고를 포함하는 것인가'는 병원의 물음에 노조가 '해고 이외의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답변하자, 병원은 또 다시 대화를 중단했다. 끝으로 29일 노조는 '지부장에 한해 병원의 모든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최종안을 내놓았지만, 병원은 '지부장 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징계해야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병원의 고자세는 이번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 경찰은 이미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고 있으며, 병원도 시설관리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등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이 깨지더라도, 이후 '제2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이번 파업의 극적인 타결 여부는 전적으로 병원 쪽의 전향적 자세에 달려있다. [범용]

### 〈광고〉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에 초대합니다

● 때 : 9월 7일(토) 3시, 6시 / 곳 : 서울 광화문 아트큐브  
상영작 : 전쟁아진 작가 War photographer

(⇒1면 '발산역' 기사에서 이어짐)

▶ 질문 :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본부'의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김 :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선 물론 '추진본부'가 있어야 될 것이다.

▶ 질문 :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 :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설치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 질문 : 서울시가 8월 28일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종합 대책'에 대한 의견은?

=김 : 대부분 98년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에서 나온 것들이다. 노력이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질문 : 발산역 사고가 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고 당시 지하철 당국은 피해자 장애인이 휠체어를 잘못 작동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김 : 본인의 작동 과실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설령 기계 작동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람을 죽게 할 정도라면, 당국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순 없다.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 질문 :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 사과와 피해 보상 등 죽은 사람에 대해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를 믿고 지하철을 믿고 이용한 건데… 사람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 질문 :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파이팅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바꾸고 점검하는 일 역시 필요할 거다. [이주영]

2002년 9월 5일(목)

제 21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싸도 아직?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

지난 2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아래 서울시경)은 2일 오후 3시 50분경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 등을 충무로역 근처에서 연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정대일 사무처장을 같은 날 저녁 연행해 갔다. 또한 3일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호 위원장의 집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 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는 "현재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를 아직 단체로 만들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강령과 규약, 자료집 등에 쓰인 '자주통일', '연방제' 등의 단어 △재일한국청년동맹 40주년 행사 참석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 2기 의장의 조국통일법민족연합 활동 등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이적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연방제'란 말을 쓴 것만으로도,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동조한다며 이적이라고 혜택이나까 아무리 평화적으로 활동해도 이적성을 벗을 수 없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 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이라 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알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때 : 9월 7일(토) 3시, 6시
- 곳 : 서울 광화문 아트큐브
- 상영작 : 전쟁사진 작가

〈전쟁사진작가〉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 지역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생생한 현장을 필름에 담아 온 미국 사진작가 제임스 나트웨이의 치열한 삶과 내면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발산역 키프트 장애인 추락찰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25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노력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씨의 동행명령 거부로 또 다시 좌절됐다.

4일 아침 의문사위는 서울 연희동 소재 전·노 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씨는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이날 아침 7시경 집을 나섰으며, 노씨는 얼마전 신병치료차 시골로 요양을 갔다고 비서관들은 밝혔다. 의문사위는 전날 전·노 씨 쪽에 동행명령 집행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문사위 박래근 조사3과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며, "이것만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노 씨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위원회 권한의 한계를 또 다시 절감했다"라고 평했다. [범용]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편집자주〉 국가권력에 의한 '전향공작'의 비인간적 실체가 최근 의문사진상 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잔재인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다. 지난 8월 29일 의문사진상 규명위는 그 중 최석기, 박용서, 손윤구 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혔고 곧 김용성, 변형만 씨에 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인권하루소식〉은 장기수의 증언을 통해 본 전향제도, 사상전향제의 개념과 역사, 교도소별 사상전향공작의 실태, 사상전향제가 남긴 것, 전향공작 과정에서의 죽음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등에 관해 앞으로 대략 4회에 걸쳐 기사를 실는다.

"그것은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애초 선고 받은 형기가 끝난 후 15년을 더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김영승 씨는 '전향공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전향공작이 노골적으로 그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73년도부터였다.

당시 김 씨가 있던 광주교도소에는 모두 64명의 비전향자들이 있었다. "73년 11월이었어. 비전향자를 12~13명 씩 빙방에 집어넣었고, 그때부터 운동·서신·면회·독서·차입물 반입 등이 모두 정지됐어. 그리고 정무종, 원삼실 등 일명 '벽봉'이라고 불리는 강제(폭력사범)들을 배치했다."

김 씨 말에 따르면, 이들은 한명 씩 양팔을 뒤로 묶어 매달고 팬티만 입힌 채 두들겨 패는가 하면, 막대기로 항문을 쑤셨고, 물고문 틀을 만들어 얼굴에 끼워놓고 면수건을 얼굴에 써워놓은 채 물을 마구 부어대기도 했다.

주운 겨울날 창문을 열어놓은 방에 팬티만 입힌 채 두는 일명 '동태고문'도 자행됐다. 물론 매번 '전향할래, 안 할래?'라며 집요하게 전향을 강요했다고 김 씨는 말한다. 갖가지 고문이 총동원된 사상전향 공작은 겨울 내내 계속됐고, 많은 사람들이 강압에 못 이겨 전향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김 씨의 경우, 74년 4월 28일 만기출소일이 다가오자 전향공작이 보다 집중됐다.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광주교도소의 다른 7명의 비전향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형과 누나를 데려다 설득을 시키다 안되니까, 구둣발로 차고 때리고 해서 한달 동안 끔찍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김 씨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20년형을 다 살고 나온 날,

적으로 분류해 버린 것이다. 대전교도소에 있던 63년 어느 날엔 박 씨에게 영화구경을 시켜준 후, 감상문을 쓰라고 했다. 쓰지 않겠다고 하자, 교도소 측은 박 씨의 옷을 짹 밟아벗기고 훌웃만 입은 채 있게 했다. 당시는 인천 앞바다가 얼었다고 할 정도로 추운 때였다. "그때 이미 전향공작을 당하다 미친 사람이 있었어. 암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교도소에선 밟아벗기고 거꾸로 매달고 심하게 했어." 박 씨는 65년 만기출소를 하면서 남은 비전향 여성 2명에게 죽진 밀단 당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안전법으로 인한 박 씨의 두번째 감옥살이는 78년에 끝났다. 길바닥에 우는 아이를 두고 온지, 3년만의 일이었다. "감옥에서 자는데, 아이 숨소리가 나. 눈을 떠보면 아이가 없고.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양이라도 됐으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도저히 (전향서를) 쓸 수가 없었어. 78년이 됐는데, 나보고 갈 거냐고 물어. 그땐 전향 선서를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스피커로 할 때였어. 절대 못 한다고 했지. 그냥 가겠다고 했어. 결국 검사가 '아이까지 범죄자 아닌 범죄자 된다'고 소견서를 써서 올려, 전향서를 쓰지 않고서도 나오게 됐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안감호소에 있으니까 나는 쏟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양심에 죄 될 일은 안 했어."

결국 사회안전법은 88년에 폐지됐고, 89년부터 비전향장기수는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영승 씨는 "출소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도 많다. 또 강압에 의해 전향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엔 지금도 사회생활에 나서는데 주저하는 이들이 꽤 있다. 전향 제도라는 게 사람을 굴복시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긍지를 파괴시키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사상전향제로 인한 인권침해는 과거에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의장, 민족문제연구소의 민삼홍 부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허영

춘 의문사지회장(허원근 일병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수지김 간첩조작, 최종길 고문치사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사건발생 후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허원근 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입

2002년 9월 6일(금)

제 21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법화하라는 한 맷한 호소에 성실히 응답하기는커녕 아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중대한 인권범죄자의 방폐막이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지난 5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해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이주영 의원 등 24명이 같은 달 24일 공소시효 배제조항 등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는 아직 이를 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라며 답답해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희 수석 사무처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입법취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는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대표단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며 1백 39개 사회단체가 연명한 의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이주영]



'발산역 키프트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26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 변절, 굴복, 반성... '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권력의 강제로 인한 사상의 변화, 전향! 전향의 역사가 50년 넘게 지속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전향은 대체로 좌익수들에게 행해졌다. 정권은 이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사상을 지키다 끝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허다했다. 도대체 '전향'이 뭐길래?

### 전향의 역사

변절, 굴복, 반성... 이런 표현들은 어감이 좋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다. 이를 간파한 1930년대 일제 사상검사들은 '전향'이란 말을 만들어, 사회주의자들이 천황제의 정통사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시작된 전향제도는 당시 한반도 독립운동을 포함한 모든 반체제 사상을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

45년 일제 폐망 후, 한국사회는 좌익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군정이 진주한다. 이때 친일세력은 반공세력이 되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연히 좌익을 대상으로 전향제도도 그대로 온존한다. 한국전쟁을 거치고 56년 정권은 전향·비전향 좌익수들을 분리 수용하고, 비전향 좌익수들에게 서류로 전향을 증명하게 한다. '전향서'는 이때부터 제도화된다.

61년 반공을 제일 국시로 군사반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비전향 좌익수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향공작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65년 중앙정보부의 감독 아래 '5단계 전향공작'의 뼈대가 완성되고, 73년에는 전향공작 전담반이 설치된다. 그리고 비전향 좌익수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법이 75년 제정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전향은 제도적으로 완성된다.

### 전향의 규모

88년 비전향자로서 처음으로 출옥했던 서준식 씨가 쓴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 - 영광과 오욕의 날카로운 대치점」(역사비평 93년 가을호)에 따르

면, 56년경 대전형무소에는 좌익수가 3천명 정도다. 이들 중 60년 4·19 직전까지 전향하지 않은 좌익수는 2백70명 정도라고 한다.

또 61년 군사반란 직후 정권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시키는데, 그 수는 8백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72년엔 4백명 정도로 줄고, 전향공작 전담반에 의한 살인적인 전향공작이 진행된 73~74년을 거치면서 약 2백명이 된다.

그렇다면 좌익수들을 전향시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준법서약서에 대한 현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효종, 주선희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개인과 국가의 대치관계가 발생할 때...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판단한다.

또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선호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되는 것"이라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전향의 실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전향서를 쓰는 것이 좌익수들에겐 어떤 의미일까? 서준식 씨는 "비록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굴복해서 본의 아니게 전향을 하더라도 전향자는 전향감을 느낀다"라며, "이는 무엇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답한다.

이에 따라 전향자들은 운동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소극적이 되며, 나아가서 비굴해지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서씨는 또 "그때그때 진보운동·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발씩 물려선다는 것은 정권에겐 엄청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종이 한 장'을 못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일반민중들에겐 짖은 것을 끌까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냉소가 생긴다"라며, "이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라고 덧붙인다.

의문사위 현정덕 조사관은 "강제적으로 (전향서를) 쓴 사람은 전향하지 않은 좌익수들로부터 서서히 분리된다"라며, 따라서 "전향서 자체는 좌익수 내의 대오를 깨는 문제였다"라고 전직 중앙정보부 요원의 주장을 전한다. 전향서는 '종이 한 장'의 문제를 넘어, 고도의 정치적 공작 과정인 것이다.

### 전향의 문제

그렇다면 좌익수들을 전향시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준법서약서에 대한 현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효종, 주선희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개인과 국가의 대치관계가 발생할 때...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판단한다.

또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선호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되는 것"이라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여하한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신념을 번복하게 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비전향 좌익수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대단히 기여한 분들"이라며,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민주화와 무관한 것이라면 몰라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그분들만큼 사상의 자유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현정덕 조사관은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실형받은 사람들도 전향대상이었다"라며, "이들 중 (정권이 전향) 강압적으로 하니까 기분 나빠서 (전향을) 안한 사람도 있다"라고 밝힌다. 전향제도가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남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대신 노동착취를 막아내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주5일근무제' 입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되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입법안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06년까지 주5일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전체 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주5일근무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기로 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II.O 조사대상국 75개국 중 7번째로 길며 (1999, II.O), OECD 국가들 중엔 가장 길다. 노동계는 연간 2천4백47시간에 이르는 실노동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일·휴가의 확대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은 오히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노동시간을 전반적으로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우, 97년 도입 당시도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것. 그런데 적용기간을 더 확대한다고

건강 악화와 임금 삭감이 예견되고 있다. 더구나 주휴까지 무급화되면, 일금·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이에 양대 노총은 5일 정부의 입법안을 '근로기준법 개악안'으로 규정, 공동투쟁을 통해 국회 통과를 저지키로 했다. 과연 정부가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주5일근무제'란 미명 하에 통과를 강행하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영)

###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에 앞장섰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씨, 그리고 김주석 씨 등 중국동포 4명이 잇따라 외국인보호소로 연행돼 강제추방당한 상황에 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요주의인물'부터 찍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까지 동원한 정부는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검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생산주체들이며, 당당히 한국 땅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의 주장은 그러한 '현실'을 '제도'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 7월 이른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나라 안팎으로 비난받아온 산업연수생제도를 오히려 확대하는 개악안을 내놓았고, 급기야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예화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사회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미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을 비롯한 20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강제추방조치의 중단과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명동성당에서는 50일 가까운 농성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숨죽인 채 일만 해오던 이주노동자들조차 지난 1일 서울 종묘공원에 1천여 명이나 모였을 만큼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만일 한국정부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 접거와 같은 극한투쟁을 벌인다면, 그 사태는 온전히 한국 정부가 자초한 일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표적단속에 의해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단속추방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력개선방안'을 철회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총궐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발산역 키프트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조사와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27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 최재호씨 실신

버스타기 행사중 경찰이 자극…박경석 대표도 상태 악화

'발산역 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26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최재호(지체장애3급) 씨가 6일 낮 3시 15분경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날 최씨는 낮 12시 서울 혜화로터리에서 열린 제1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광화문에서 덕수궁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농성장인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는 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쪽으로 가려던 순간,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흥분한 최씨가 실신을 했다.

최씨가 서울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직후, 노들장애인야학 김도현 교사대표는 최씨가 폐렴증상이 있으며 몸에 산 소량이 부족하다고 검사결과를 전했다. 또 단식 과정에서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진 상태이지만, 입원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버스타기' 행사에 참가했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도 탈수증세를 보이며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법용)

## 인권하루소식의 미래상은?

<다산인권> 편집인 송원찬

인권하루소식 창간 9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내 앞에 놓여있는 인권하루소식은 이젠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조급하고 엉뚱한 고민인지 모르지만 과연 인권하루 소식의 미래상은 무엇일까 고민해봅니다. 9년의 시간이 나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조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언론으로 변모할 것인지… 어쩌면 현재의 모습이 여전히 유효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인권하루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이 내부적인 토론이든 공개토론이든…

이제 인권하루소식은 만드는 기자와 인권운동사랑방만의 자산이 아닌 듯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권하루소식이 우리 사회 인권현실과 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해온 인권운동의 보고이자 성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한켠 소파에서 밤잠을 설치면 매일 기사작성으로 충렬된 눈으로 녹초가 되어있을 그대들 있어 오늘이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축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이주노동자 비두, 꼬빌 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행위가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새벽 6시 비두, 꼬빌 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주노동자 14명을 차로 끌고 갔다. 조사 후 나머지 12명은 풀려나고 비두, 꼬빌 씨만 출입국사무소로 연행돼, 곧바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넘겨졌다. 급기야 5일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두, 꼬빌 씨의 서명도 없이 여권을 새로 만들고,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

이같은 대응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마야 씨는 "이주 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깨뜨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주지부는 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비두, 꼬빌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공은나)

## 끝나지 않을 노래

<평화와인권> 편집인 서미숙

5천년에서 1만년 사이, 사람(또는 곰)들은 자식을 낳고 (단군신화) 군대를 기르며 농사를 짓고 왕국을 키우고 여자의 몸을 정복해 결혼에 가둬놓고, 노예를 체찍질하며 몇 백년 이후 여기에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다.

스물, 혹은 서른의 정열과 꿈을 사람들은 군주와 노예의 법에 저당 잡혀 오랜 고난과 죽음의 날들을 겪어야만 한다. 삼청교육대나 자살로 위장한 군대나 70년과 90년, 20세기와 21세기가 어쩌면 이렇게 한치도 다르지 않은지, 독재정권과 문민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같은 모습인지. 과학이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 때 인권하루소식은 과학보다 더 큰 힘, 죽지 않을 권리의 외침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으므로.

지금 그 외침들은 다양한 투쟁으로 남아있고 서로 간절히 손맞잡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손맞잡음과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억압에 대한 투쟁에서 9년 간의 수고로 움은 차마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커다랗게 남아 있다.

인권운동을 이끌고 있는 모든 이들의 진실은 '인권'이 단군신화와는 다른 문명의 가치라는 것. 하루소식은 여전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되어야 할 이유를 준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71년 '목포지역 선거 공작수사' 과정에서 의문사한 김창수 씨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 이던 김씨는 공화당 후보가 패한 목포 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공작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관사했다는 것.

의문사위에 따르면, 71년 5월 목포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가 당선되자, 공화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박 정권은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목포경찰서 김영근 경위와 광주경찰서 김병우 순경은 김씨를 20여일 동안 회유·협박해, 같은 해 6월 20일 끝내 김씨로부터 '개표 당시 허귀남 씨 등 신민당 참관인들이 투표 용지 1백 매를 절취, 부정투표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다음날 밤 김 경위 등은 서울에서 조사를 받던 허씨의 대질심문을 위해 김씨를 강제연행, 열차에 올랐다. 하지만 김씨는 22일 아침 6시경 전북 김제역 근처 철로 부근 논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25일 아침 11시경 사망했다. 이 직후 목포경찰서와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씨가 취중에 발을 헛디뎌 열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재수사에 착수했던 광주고검 목포지청은 김씨가 열차를 탈출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서둘러 종결했다.

반면 의문사위는 국과수 이민규 등 국내외 법의학자 3명의 일치된 재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추락에 의한

2002년 9월 10일(화)

제 21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하지만 의문사위는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 김씨의 열차탑승 과정 김씨의 열차이탈 과정 모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권위주의 정권에 직접 항거하기 위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정·탈법 선거를 감시하고 올바른 투·개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사한 활동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박 정권 시절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밝혀내진 못했지만 "적극적 항거가 아니라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전향적 해석"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법용)

## 죽음까지 물고 온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6일 사망

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지난 달 23일 분신을 시도했던 노점상 박봉규 씨가 지난 6일 아침 8시 30분 경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39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는 9일 아침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까지 물고 온 노점상 단속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 중구 청계3가에서 공구를 파는 노점을 혼은 박 씨는 8월 한달 동안 세 차례나 중구청에 의해 단속을 당한 후 23일 오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했다.〈본지 8월 29일자 참조〉 박 씨는 전신 80% 3도의 화상을 입고 15일 동안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박 씨의 딸 진 씨는 "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 불법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소리를 들었다"라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토했다. 또 전국노점상연합의 김홍현 의장은 "치솟는 전·월세에, 월드컵이다 아시안 게임이다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점상 단속에 도시 빈민은 지쳤다"라며 밀어붙이기식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점상은 실업·반실업의 고통이 야기하는 빈곤의 증가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단속과 처벌과 같은 방식으로 결코 노점상을 없앨 수 없고 거센 반발과 투쟁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영)

'발산역 키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30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  
함께 갑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평등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현해온 것이 인권의 역사다. 그 중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주거 이전의 자유이다. 주거이전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의 부와 향락을 위한 도구 내지 부속물로 여긴 결과이다. 특권이 없는 사람이 결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이유와 사회적인 존재이유를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제는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니, 자명한 사실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척은 하고 있다.

강제로 사람을 이주시키는 것도 속박이요, 특정한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폭발적으로 촉발시킨 것도 흑인은 버스의 특정한 좌석에 앉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누구나 고급 레스토랑이건 싸구려 포장마차건 출입할 수 있으며, 택시건 트럭이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좌석도 제한없이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버스 좌석은 비슷비슷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쉽게 그 차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이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차별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누구든 버스나 택시나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몸이 성한 사람만 타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은 몸이 성한 사람만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세상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마음이 다친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리고 어린 사람도 있다. 이 모든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다. 특정한 신체적 조건과 연령층만을 위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통념은 곧 인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특권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특권층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인간역사 이래 어떤 사회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몸이 성한 사람도 함께 있는 법이다. '우리' 속에는 이 모든 사람이 포함돼 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성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리를 똑같이 누려야지, 결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진영종,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 주요 통계 : 고졸 실업자, 32만명으로 대졸 이상 실업자 17만4천명의 두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2002. 7)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1.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규정 철회 촉구(9.5) /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노동자 69%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73%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주휴와 생리휴가 무급화되면 임금 더 낮아진다"며 정부안 수용불가 입장 밝혀(9.6)

## 2. 밝혀진 진실, 드러난 한계, 뒤따라야 할 조처

의문사진상규명위, 현장조사…허원근 일병의 '자살조작' 뒷받침하는 추가 목격자 중대본부 요원 등 진술 공개(9.3) /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9.4) /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아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연수제도 철폐·인권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9.9)

## 4. 죽음으로 이어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사망…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에서 분신한지 15일만에 (9.6)→39개 사회단체,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9.9)

## 5. 국가보안법, 존속 구실 찾아 몸부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씨 등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9.2) / 인터넷 게시물 관련 국보법 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 씨, 첫 재판(9.6)

6. 기타 : 국가인권위, 재소자들의 인권위 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9.2) /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시작(9.4) /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친고죄 적용 배제토록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9.6) / 밭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요구 단식농성 26일째, 최재호 씨 실신(9.6)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용'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용'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르면, 경찰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지난 2월 자동협 유영재 사무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위헌제청 신청도 했다.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는 △진술거부권 보장(헌법 제12조 2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 후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때 이를 강제한다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31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2002년 9월 11일(수)

제 21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또 "수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만을 고려해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가 진술거부권 보장과 양심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수사의 편의성만 위해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일단 환영했지만, "진술과 양심의 개념을 좀 더 해석했다"라고 아쉬워했다. (범용)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1년은 52주다. 주5일제가 되면 연간 1백4일의 주휴가 생긴다. 여기에 연간 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이니, 모두 1백43일이 된다. 또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를 약 10일로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연차휴가가 1일씩 올라가게 되면, 남성노동자는 최대 1백73일,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12일을 포함해 최대 1백85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재계의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됐을 때 1년의 반 정도가 휴일이 된다. 이는 일본의 1백29~1백39일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재계의 숫자놀음은 그렇듯 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다. 먼저 외국에선 약정휴가를 연간 휴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휴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계의 주장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계청 2001년 「경제활동인구월보」에 따르면, 임시직·일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52.4%를 차지한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월차·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연월차·생리휴가가 유지되더라도, 약정휴가를 논외로 하고 주휴와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연간 휴일 수는 '평균' 1백36일 정도. 이는 일본의 연간 휴일수를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2년마다 1일 추가)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수는 최소 1백36일이 되지만, 이는 연장·휴일근무, 휴가 미사용 등으로 온전히 향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과반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미 저도 남의 이야기일 뿐. 개정안은 이들에게 1개월에 1일씩의 휴가만을 주고 있다. (범용)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50년 7월 경찰들이 총을 들고 중무장한 채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 갈매기섬으로 데려갔다. (중략)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다 주민들을 사살하겠다고 위협해 내다보지도 못했다. (중략) 갈매기섬이 온통 시커먼 물체로 뒤덮여 있고 시커먼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여 가까이 가보니 파리떼 아래로는 시체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들이 수없이 쌓여있었다. (중략) 시체 색은 냄새가 너무도 진동해 서있기가 힘들었다. <해남신문 2002. 7. 26일자 중 발췌>

진도 수품리항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을 가면 그 생김이 갈매기와 닮았다는 갈매기섬이 있다. 무인도인 갈매기섬에서 곡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낚시꾼들 사이에서 무성해, 진도사람들은 의해 물속 원훈으로 여겼다.

지난해 정부는 제주4·3항쟁과 관련해 갈매기섬의 집단유골에 대한 전설을 조사해 줄 것을 진도문화원(박문규 원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박문규 원장이 지역의 노인들에게서 확인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갈매기 섬에서 해남 지역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집단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망자 수치와 학살일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1950년 7월 해남지역 곳곳에서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3백50여명이 갈매기섬에 끌려가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 10여명의 갈매기섬 피학살자 유족들은 지역언론 및 사회단체 활동가와 함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섬을 방문, 천도제를 지냈다. 섬 중턱, 동백나무가 빼곡이 늘어선 곳 사이로 천도제를 지내기 위한 상이 차려졌고, 그 뒤로는 최근 박 원장이 수습해놓은 유골이 비닐에 싸여 있었다. 태풍으로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 바다이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하얀 유골과 주인 않은 고무신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천도제에 참여한 박미숙 씨(53살)는 당시 갓난아이였고 아버지와 큰아버지 를 갈매기섬에서 잃었다. 박씨의 어머니 채은애 씨(75살)는 “당시 경찰이었던 남편은 모략으로 끌려가 죽었다. 수소문 끝에 섬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5명이 저녁에 배를 뒹는데 새벽에야 도착했다”라고 전했다. 채씨는 “섬 전체가 시체로 덮여있었다. 서방님은

썩은 체로 (강한 햇살로) 바짝 말라있었다”며 “그때 내가 안 갔으면 찾기 힘들었지”라고 회상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한밤중에 찾거나 선 사람들 중 시신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예 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형을 잃은 오길록 씨(62살, 당시 9살)는 형 철수 씨가 잡혀가던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다. 오씨는 “당시 신혼이었던 형을 경찰과 민간인 2명이 집으로 와 잡아가려고 하자 누이가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누이에게 공포탄을 쏘며 욕설을 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오씨의 형과 함께 잡혀갔다 살아온 사람이 있어, 그의 안내로 오씨는 64년에야 형의 유골을 수습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은 집도 웬만큼 살고 동네에선 지식층에 속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해방 후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농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실제로, 일제시대 경찰 내에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쳤던 오흥택 씨도 갈매기섬에서 학살됐다. 농민운동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해남군에서 폐낸 역사책 ‘해남군사’에 의하면,

다가 경찰이 부산으로 후퇴를 결정한 24일, 보도연맹원 60여명은 재소집돼 모두 사살됐다.

그러나 보도연맹원의 수는 ‘해남군사’가 밝히는 60명 이상이라는 것이 당시 목격자들의 종론이다. 최근 갈매기섬 학살을 기획특집으로 다룬 해남신문에 의하면 ‘각 면단위 지서별로 소집과 학살이 이뤄졌고 그 장소가 갈매기 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난 갔다 돌아온 경찰들이 갈매기섬을 대대적인 살육 장소로 이용했던 사실도 밝혔다.

그렇다면 학살장소를 갈매기섬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해남신문은 진도의 갈매기섬은 해남과 행정구역이 달라 사건은 폐에 용이하고 해남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무인도라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목격자들을 만나 본 해남신문의 박영자 기자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주민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라며, “주민들이 마음놓고 즐언하려면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족뿐 아니라 경찰이 총을 들고 주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도 담 사이로 10여명씩 묶여서 끌려가는 것을 본 사람, 배나 삽 등을 빌려준 사람, 직접 배를 몰고 갈매기 섬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도 일부가 생존해 있지만 즐언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들 중 몇몇은 누군가가 즐언하는 것조차 꺼리며 적극적으로 막는다고 한다.

박 원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갈매기 섬에 폐무덤을 만들고 위령비를 세우고 억울한 원혼들이 한을 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라며 유족들을 주스렸다. 이날 모인 유족들은 조촐하게 유족회(회장 오길록)를 결성해, 갈매기 섬에서 희생된 피학살자들의 유족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갈매기섬 이외에 해남 전역에서 최소한 5백에서 1천명 정도의 주민이 희생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11일 낮 2시 시청역 1호선. 장애인 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10여 명이 열차가 떠난 선로 위를 점거했다. 이들은 선로 중앙에서 일렬로 늘어선 후 3인 1조로 철제 사다리를 머리에 얹고 쇠사슬로 온몸을 고정했다. 그리고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대열 앞에서 이동권연대 박현 조직국장은 “어차피 리프트 타다 떨어져 죽을 바야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절규했다.

같은 시간, 비장애인 50여명은 승강장 위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서울시 공개사과’ 등을 외치며, 투쟁에 동참했다. 몇몇 비장애인들은 선로로 내려가, “서울시는 공개사과하라”라는 플랭카드를 펼쳤다. 이때 전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시청역에 모습을 보이며 플랭카드 앞까지 바짝 다가와 멈췄다. “꽝, 꽝!”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도 이들의 절절한 외침을 멈추진 못했다.

“작년 오이도역 추락사고 때부터 국무총리 면담도 신청하고, 재판도 걸어보고, 시장 면담도 요청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며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누구 한명 책임있는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번 발산역 사고 때도, 4개월 동안 30여 차례나 고장난 기계를 갖고, 장애인 실수 때문이라고만 한다.” 박현 조직국장은 물분을 터트렸다.

중증장애인 문명동 씨는 “장애인 누구나 리프트 타다 죽을 수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이 투쟁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위에서 농성 중인 비장애인들을 에워싸고,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현장에서 멀리 이동시켰다. 장애인들만 남은 선로에서 경찰들은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고 장애인 한명한 명을 들것에 실어 대열을 해산했다. 이후 승강장에 남아있던 비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1시간 넘게 열차운행을 멈추면서까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의 투쟁은 이렇게 제압됐다.

이동권연대는 이날 투쟁에 참가했던 76명 전원이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김창민 씨가 경찰에 구타당해 강북 삼성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날로 단식 31일째를 맞았다. 서울시는 이동권연대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용)

##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제 입법 논의

형소법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국회가 공소시효 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위원회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제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도 시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상충되고, 공소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과 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춘(한나라당)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에 합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함승희(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제에 대한 신중론을 했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시효부적용 건의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승희)로 회부됐다. [이창조]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 이동권연대 단식 32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아만성은 국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죄의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무부는 73년 6월 전향공작전담반을 공개채용, 같은 해 8월 6일 대전·대구·전주·광주 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 배치해 죄의수형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향공작을 시행했다. 그리고 60년 출범 이후 죄의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이 과정을 모두 보고받으며 조정·통제했다.

#### 대전교도소

4개 교도소 중 최초로 73년 8월부터 일반 재소자(폭력사범)를 동원한 전향공작을 시행했다. 폭력사범 조모 씨는 격리사동 1방에서 죄의수형자를 폭행, 전향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죄석기, 박용서 씨 등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에 따르면, 죄 씨는 74년 4월 4일 조모 씨 등에 의해 몸 전체를 구타당했고, 같은 날 밤 사망하고 말았다. 또 박 씨는 같은 해 7월 19일 사방청소부 이모 씨로부터 전신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하며 전향을 강요당했다. 당시엔 일반수형자 중 선발된 사방청소부 역시 전향공작에 동원됐다. 박 씨는 고문을 당한 이튿날 새벽 자신의 동매를 절단해 자살했다.

####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는 73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폭력재소자, 일명 '떡봉' 정무종, 원삼실을 배치, 로프로 뼈리를 만들어 내리치기, 물고문 등 같은 고문을 동원해 전향을 강요했다. 75년도부턴 사방청소부 전모 씨, 이모 씨가 규율위반 등을 구실 삼아 비전향자들을 구타했고, 교무과에 불려가 맞는 것이 다음 수순이었다.

"교무과에서 머리를 많이 두들겨 맞아 정신이 흐릿해질 정도였어. 그리곤

저녁에 자신의 옷을 찢어 목을 달았어." 김영승 씨에 따르면, 75년 11월 22일 신춘복 씨는 이렇게 죽었다. 76년 5월 21일 사망한 최한석 씨 경우 "심장·위장병에 고혈압까지 있었으니 완전 병자였어. 근데, 전향을 않는다고 치료도 안 해주면서 '직싸게' 때렸던가봐. 앓는 소리가 났는데, 사방청소부 이 씨는 '폐병'이라고 한 거야. 결국 그날 1시간쯤 있다 죽었다." 교도소 당국은 질병 역시 전향강요의 큰 미끼로 이용했던 것이다. 위장병을 앓았던 김규호 씨 역시 약의 차입을 요구하다 교무과에서 심하게 구타당하고 76년 6월 저녁 목을 매고 자살했다.

#### 대구교도소

사방청소부를 비전향 죄의수들을 폭행, 협박하는 등의 전향공작에 동원한 건 마찬가지. 당시 이곳에서 죽은 사람 중 한명이 손윤규 씨다. 고혈압과 위궤양 등에 시달렸던 손 씨는 76년 3월 24일 전향공작전담반에 의해 실신 상태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했다. 이에 항의, 단식에 들어간 손 씨에게 교도소는 강제급식을 실시, 손 씨는 건강상태가 악화돼 사망하고 말았다.

#### 전주교도소

이곳에선 가혹한 전향공작 전례 있는 강모 교무과장 등이 부임한 78년 10월 이후 전향공작이 본격화됐다.

"탁해설 선생이 늦도록 들어오는 게 안 보였는데, 알고보니, 한윤덕 교회사가 탁 선생한테 모진 테러를 가한 거였어요." 안학설 씨는 당시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풀어놨다. "병사 2층 독방에서 매일 때렸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벽을 받아, 머리가 으스러질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보호모를 써우고 혁수정을 채우고 또 때리고, 죽을 방법도 없잖아요. 여드레 됐을 때, 탁 선생이 '전향이란 마음의 문젠 데 생각해볼 수 있게 (혁수정을) 끌려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후, 탁 씨는 목을 매죽은 채 발견됐다. "사람이 고귀한

것이 양심이 있다는 건데,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마음의 부담이 돼 어떻게 살 수 있나'라는 말을 남겼다고 들었어요."

75년에는 사회안전법이 제정, 형기가 만료됐음에도 비전향한 사람들은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다시 끝모를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청주보안감호소는 "전향 안하면, 세상에 못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였던 셈.

#### 청주보안감호소

이상을 씨는 80년대 초반부터 자주 쓰러지곤 했다. 감호소 당국은 이를 폐병이라며 방치했다. 몇년이 지난 후 처음 뇌사진 촬영을 받아보니 이 씨의 병은 뇌낭증증이었다. "자꾸 자뿌려지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약도 제대로 안 주고. 나중엔 뚱, 오줌도 가릴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감호소 측은 이 씨를 내보내지 않았음은 물론, 끝까지 독거 수용했다고 김영승 씨는 말한다. '전향만 하면 병사에 입원시키고, 형집행정지로 내보낼 수도 있다'는 회유는 끊임이 없었다. 결국 이 씨는 87년 2월 의식불명이 된 후에야 감호소를 나갈 수 있었다. 앞서 80년 7월엔 감호소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 단식농성을 하던 이들에게 강제급식을 강행 변형만, 김용성 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장기수 모임 '통일광장'은 65년부터 89년까지 총 73명의 장기수들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죽은 이들의 수는 이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도 한다. 그나마 이들 중에서도 명백히 사인이 밝혀진 경우는 최근 의문사위가 조사한 죄석기, 박용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 씨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사인은 당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만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강제 전향공작과 수십 년 간의 장기구금이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이들 모두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은 어찌됐든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9월 13일(금)

제 21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 면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7월 말 부산동아대생 임치윤 씨에 이어, 12일에는 서울대생 나동혁 씨가 입영을 거부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 14명도 이날 집단적으로 예비병역거부를 선언해, 병역거부의 대열에 동참했다.

아침 11시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나씨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과 순응 대신, 다른 이를 인정할 줄 아는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땅에 평화와 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병역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예비병역거부 선언자 14명을 대표해, 경희대 대학원생 염창근 씨는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앞으로 요구될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 사람을 향해 총을 들지 않을 양심,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양심이 그것. 염 씨는 "국가기구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나서지 않고서는 현 병역제도 문제 가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성명도 이어졌다. 여성해방연대 김영미 씨는 '군필 남'을 대우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징집의 대상이 아닌 여성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최근 고위층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와 허원근 일병 타살사건 등 군대내 민주화 문제는 (병역제도에) 집단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라며, 병역거부 행위와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징집과정에서의 비리와 군대내 비민주성 자체가 병역거부의 직접적 이유가 되진 않을 지라도, 병역의무를 당연시해 온 젊은이들에게 최소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범용)

### 브래지어가 자살용 물건?

피의자 인격권, 행정편의보다 우선돼야

경찰이 연행된 보건의료 여성노동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게 한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조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경희의료원 조합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16명에게 사물보관대에 브래지어를 벗어놓고 들어가도록 했다. 이 중 14명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속옷을 벗었으나, 다른 2명은 수치심을 유발시킨다고 반발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2일 노원경찰서 수사1계 관계자는 "(연행된 사람들)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브래지어는 끈이 달렸기 때문에 자해 위험이 있어서 벗게 했다"라며 규정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훈령 제352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9조 ①항은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 그 피의자가 협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성인 여성의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브래지어를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이를 벗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자살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란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불편이나 인격권 침해 여부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연행된 조합원들이 자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33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두터운 이데올로기적 편견은 전향 거부행위를 민주화의 진전이란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만간 의문사진상규명 위는 전향제도를 거부하다 사망한 이들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이에 앞서 전향 거부와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저항권과 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정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바로 인권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한 저항과 개인과 공중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저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중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투쟁으로 실현되어 왔다.

최근 장기수 모임 '통일광장'은 65년부터 89년까지 총 73명의 장기수들이 감옥 안에서 죽었으며, 실제 죽은 이들의 수는 이보다 좀더 많을 거라고도 주장한다. 이들 중 최근 의문사진상규명 위가 밝힌 최석기, 박웅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씨는 73년부터 진행된 극악한 사상전향공작에 저항하다가 고문 및 구타에 의해 죽어갔다고 한다.

냉전이 심화되던 7, 80년대 군부독재가 자행한 수많은 인권침해 중 하나가 바로 강제 사상전향공작이다. 이른바 죄의 사범들에게 자행된 사상전향공작은 반인륜적 범죄이자 인권침해행위이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폭력행위였다.

사상전향공작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민주사회的基本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권유린 행위였다.

이러한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책과 폭

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법정에 세워져야 한다.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그들이 행한 폭력과 고문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인권적 반민주적 폭력에 저항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희생은 인권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사상전향 거부행위와 인권신장의 관련성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달한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서 제도에 대한 의견' 중 지금의 주제와 관련된 장면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나 타인의 강제에 의해서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비록 그 각 행위가 다양한 원인과 배경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인권신장에 기여한 행위가 아니라고만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할 것입니다.

사상전향공작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상전향공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리주의 통치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향공작은 사람의 내심의 사상을 바꾸도록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단지 책에서 배운 사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중의 삶을 옥죄는 외세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단지 책에서 배운 사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중의 삶을 옥죄는 외세와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와 투쟁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협하게 재단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 슬픈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더 겸손해야 한다.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사망한 것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관련자명 예회복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위 법률상의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리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다면 위 민주화운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뿐만 아니라 권리주의 공권력의 행사에 순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상전향공작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상전향공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리주의 통치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향공작은 사람의 내심의 사상을 바꾸도록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단지 책에서 배운 사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중의 삶을 옥죄는 외세와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와 투쟁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협하게 재단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 슬픈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더 겸손해야 한다.

(→2면에서 이어짐) 전향공작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리주의 통치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행위자의 사상이 무엇인지 여부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행위자의 사상이 무엇인지에 의해 그 결론이 달라진다면 이는 국가가 특정한 사상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총무〉

###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사상의 자유 투쟁

인간이 가진 내면적 사상을 외적 강제에 의해 강요받지 않을 사상의 자유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전향제도나 전향공작이란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극악한 반민주적 행위였으며 이를 거부하고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마땅히 민주화운동이다. 전향공작 과정에서 전향을 거부하다 사망한 이들은 부당한 권리의 인권유린에 맞서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에 대항 저항, 거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권력의 탄압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란 단지 정치사상적 좁은 의미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외세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단지 책에서 배운 사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중의 삶을 옥죄는 외세와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와 투쟁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을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협하게 재단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 슬픈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더 겸손해야 한다.

〈박종보 교수, 대전 한남대 법학과〉

### 전향 거부와 민주화운동 관련성

1.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종교나 세계관에 관하여 중립적이며 특정한 국가이념을 설정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하에서 국가기관이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험적인 공권력행사이며, 전향을 거부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의 요건은 첫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이어야 하고, 둘째, '민주화운동'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어야 한다.
3. 먼저 전향거부행위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인가 문제된다. 양심의 자유 보장은 전체주의체제를 거부한다. 국가가 국민의 신념을 '그렇다'고 평가하고 '옳은' 이념을 주입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적 통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주의적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항거'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모든 경우에 그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공권력행사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극적 불순응이 적극적 저항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교정당국이 진행한 총체적인 강제전향공작은 수령자의 전향 여부에 따라 가혹한 폭행, 구금의 극단적인 장기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는 것이어서,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4. 법률상의 민주화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어야 한다. 준법서약서 제도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전향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양심의 자유가 불완전하게 나마 신장되는 데 많은 죄의수형자들이 전향거부행위가 기여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행위자에게 일반 국민의 기본권신장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도가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공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대한 모든 개인적·개별적·일회적 항의나 시정요

구를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하게 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준 경우면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권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지, 타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숭고한 목적으로 혼신한 지사들에 의하여 확보된 것은 아니다.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모든 의식적인 활동은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활동이 된다.

5. 위 항과 관련하여 죄의수형자들의 전향거부가 사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소신에 찬 행위일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확립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의 사상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 양심은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내면에 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확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일정한 행위와 부작위에 관한 의무감" (독일 연방행정법원)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 내용이 무엇이라고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은 사상의 자유도 보호한다. 이른바 국시(國是)라고 하는 강령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양심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적어도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정부의 통제가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수령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양심의 자유 보장 여부와 상관없다. 어떤 이유로 수령자가 되었건 간에 신념을 바꾸라는 강요에 저항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행위이다.

6.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향공작과 전향을 거부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행위는 권리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킨 행위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

(원래 이 글에 있던 필자주는 지면 한계 상 생략했습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참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 안하무인 한국까르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지금 제가 이렇게 외출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지만, 여러분! 까르푸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이보다 더 위태롭게 합니다"라고 절규하는 정향숙(36) 씨는 한국까르푸 중계점 건물 외벽에 오직 끈 하나를 의지하고 매달려 있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는데도 단체협약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은 까르푸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못된 회사는 우리보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매일 감시를 받으며 숨죽이고 일만 하라고 합니다" 정향숙 씨는 까르푸 노조 중계지부의 조직부장이다. 그런데 지난 4일 비정규직으로 노조간부 활동을 해 온 정씨에게 회사가 내민 것은 '계약해지' 통보였다.

13일 천막농성 7일째, 까르푸 노조는 오후 3시 한국까르푸 중계점 앞에서 '까르푸 만행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노조탄압 중지 및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 철폐 △근무조건 개선 △단체교섭체결 등을 요구하며, 까르푸 노조가 파업투쟁에 나선지 1백15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까지 단 2차례의 교섭을 했을 뿐, 성실교섭은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까르푸 노조 일산지부 한 상미 사무국장은 "회사는 흑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는 상여금 대신 상품권을 돌리는 천박한 프랑스 자본이 까르푸다"라고 비난하고, "5년이 넘은 노동조합이 조합 사무실 한 칸이 없어서 임시전막을 사무실로 이용해야만 한다"라며 한국까르푸의 치졸한 노조탄

압을 폭로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고공투쟁을 마치고 정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농성장으로 내려왔다. 까르푸 노조 중계지부 이경옥 사무국장은 "정향숙 조직부장이 지난 6월 재계약을 할 때 회사로부터

###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필수공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등 필수공의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중재안이 나오면 노조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니, 결국 병원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위헌성은 이미 법원도 인정한 바, 현재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제도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CMC의 경우 파업 전날 노조의 교섭 요청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했다고 한다. 같은 시기 조정신청을 낸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중 37곳이 파업 직전에, 29곳이 파업 1일차에 타결된 것과 비교하면, CMC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CMC는 또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란 이유로, 파업 이후 본교섭을 단 1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부장 선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이겠다는 노조의 최종 양보안도 성에 차지 않은 듯 거부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 월가월부하지 말고 일단 파업을 풀면 선처하겠다'며 노조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라고 요구했다. 사용자들은 애초부터 노조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계속해서 공권력에 의한 진압을 원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배짱은 정부의 아낌없는 공권력 투입에 더욱 기가 산다. 파업의 원인은 그대로 있고 노동자만 쓸려나갈 뿐이다. 그것이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게 자존심의 문제일지 모르나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용자들의 책임은 도대체 언제 물을 것인가?

'발산역 키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34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2002년 9월 14일(토)

제 21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2176 호)

2002년 9월 14일 [2]

##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한국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 B씨. 귀화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개인정보통제권리를 강제로 뺏는 행위나 강제 채권을 하는 행위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경찰청에서는 대형사고나 범죄수사 시에 신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지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씨름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과 같은 정보는 그 정도에 있어서 과도하게 많거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십년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청구인, "지문날인의 주목적이 범죄수사의 용이성을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범죄인으로 추정하

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가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측의 설전이 끝나고 헌법재판관들의 위헌결정이 발표됐다. 아래 주문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

△현법 10조는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자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체취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권을 하는 행위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경찰청에서는 대형사고나 범죄수사 시에 신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지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씨름

드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도 지문을 활용하지 않고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편집자주)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의 동일성을 모두 확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단 자체도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경찰청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모아 두고 이 중에서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전 국민은 유죄로 추정되고 범죄현장에서 체취한 지문과 다를 경우에만 무죄로 보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져야 할 뿐 그 번호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담겨져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증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굳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정보를 담아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정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문날인제도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가상으로 내려진 위헌결정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된다. [이창조]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 총노동시간, 노동자들 등골 훔다

쉬는 날이면 집에서 꿈쩍 않고 잠을 자거나 TV만 보게 된다는 노동자들. 이러한 현상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실노동시간이 설명해준다. 2002년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2001년 한국 노동자들의 총노동시간은 2천4백47시간이다. 2천시간을 결코 넘지 않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길다. 99년 기준 II.O 노동통계연감을 보더라도,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국 중 7번째로 길다.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를 하자고 했을 땐, 이처럼 인간을 혹사하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재계는 주5일 근무제를 하면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과연 그런가?

총노동시간 2천4백47시간이란,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할 때 1년 중 3백 6일을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루 적정노동시간의 기준이다. 결국 실제 일하는 총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면,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휴일 수는 59일에 불과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평균 주당 4시간만큼 총노동시간이 단축된다 가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휴일수는 85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재계가 곧잘 비교대상으로 삼는 일본은 8시간 노동일 기준 휴일수가 1백35일, 미국은 1백39일이다. OECD 가입국 중 우리 다음으로 총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만 하더라도 휴일수가 1백26일로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재 재계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총휴일수 및 국제기준을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총노동시간을 고려하며 주5일 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진상규명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23개월 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정리해 1개월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후 5개월 내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하지만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16일 아침 11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문사위의 활동을 연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플랜카드 문구는 이들의 절절한 요구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애초 최장 9개월이던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은 2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계속 연장돼 왔다. 그런데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또 다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문사위가 조사를 개시한 82건에 대한 최종결과가 잘 설명해 준다. △기각 33건 △의문사 인정 19건 △진상규명 불능 30건. 16일 저녁 7시 30분까지 계속된 의문사위의 회의 결과,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전체 의문사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단’된 것을 의미했다.

“국가가 나서서 의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의문의 죽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의문의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관계 기관들의 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위원회 조사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조사기한에 쫓겨 조사를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문사 조사중단 ‘사태’에 대한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의 꾸짖음은 준엄했다. 이들은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물론 △조사권한 강화 △공소시효 적용제 △특별검사 임명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2002년 9월 17일(화)

제 21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주차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37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그것이 피진정인인 서울시에게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점을 우려해 나온 얘기”라고 혼명했다. 인권위는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와 관련 지난 8월 26일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씨는 “발산역 사고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발표하면 되는 문제”라며 “조사결과 발표와 농성을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국제민주연대의 최재훈 씨도 “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는데, 어떤 이유로든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모든 층 입구에 (7층, 11층 제외) 전자잠금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한달 넘게 곡기를 끊은 채 계속되는 장애인들의 공개사과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이주영]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37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

##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지난 12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영국의 지적재산권위원회의 특허권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가난한 나라들이 특허보호에 대한 서구기준을 채택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며 의약품특허를 규제하거나 아예 의약품특허를 가능하면 늦추라고 권유하고 있다.

TRIPs로 알려진 WTO의 특허협약은 선진국을 제외한 주변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에 큰 문제를 냥고 있다. 특정 지역 성인인구의 1/4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정도로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인 사하라남부 아프리카나 남미는 특허에 의한 에이즈치료제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허로 인한 글리벡의 고가 약가 정책으로 인해 백혈병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죽음을 선고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과학발전에 의한 복음이었으나 그 ‘복음’은 곧 글리벡 가격에 의해 ‘사망선고’로 바뀌었다.

글리벡 약가인하를 주장하면서 1년을 넘게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온 환자들의 슬로건은 ‘이윤보다 생명이다’, ‘약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돼야 한다’였다. 그러나 사적시장에 기초한 의료체제를 운영하는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불가능한 요구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 죽지 않고 살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고통을 치유할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사 먹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다.

특허는 본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선행하는 생존권의 문제로 의약품의 특허와 접근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떤 학자는 말한다. 지난한 나라들에 대한 필수의약품의 접근권을 강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한국은 주변국이 아니라고, 그러나 되물어 보자.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병이 걸려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약을 사 먹을 수 없는, 접근권을 박탈당한 국민일 뿐이다.

모두는 언제든 병에 걸릴 수 있는 잠재적 환자이다. 글리벡 약가인하와 보험적용 투쟁에 관한 현재의 문제는 백혈병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으며 이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끔찍한 세상을 뒤바꾸는 싸움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의약품은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손목시계가 아니고, 또 하나 가지면 좋을 장식용 목걸이가 아니다.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국가는 이제 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아픈 환자들에게 약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목숨을 담보로 죽음의 거래를 행하고 있는 노바티스의 특허로 인한 독점적 이윤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준) 기획부장)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1. 절반의 진상규명, 나머지 절반은 언제?

의문사진상규명위, ‘71년 열차추락사한 김창수 씨는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중 사망한 것’ 밝혀 (9.9) / 의문사위, “허일병 의문사는 타살 뒤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 결론 (9.10) / 김원웅(한나라당) 의원 등 25명, 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하고 특별검사 임명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9.10) / 의문사위, 74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8명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중정의 조작이었다고 밝혀 (9.12) / 국회, 의문사법 개정 방지 (9.13) / 유족과 사회단체, ‘의문사 조사중단 항의 및 법개정 촉구’ (9.16) / 의문사위, 조사활동시한 종료 (9.16)

#### 2. 경찰력 투입 만능주의 또 되풀이

경찰,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에 병력 투입…농성중인 노조원 4백90여명 연행→노원경찰서, 경희의료원 조합원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 자해 위험 있다며 브레이어 벗고 들어가도록 해 피의자 인격권 침해 논란 (9.11) / 81개 사회단체·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명, 경찰의 병원 투입 규탄 (9.12)

#### 3. 병역거부, 봇물 더지나?

부산지법 박민수판사,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 구속영장 발부 (9.11) / 나동혁 씨 입영 거부…대학(원)생 14명도 집단적 예비병역거부 선언 (9.12) / 대학생 16명,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 기습시위 (9.13)

#### 4. 전쟁광 미국, 누가 좀 말려줘요~

부시, 유엔총회에서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 사찰결의를 거부해 유엔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면 군사행동하겠다”고 밝혀 (9.12) / 이라크,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의 원유를 차지하려 시도” 비난 (9.15)

#### 5. 가진 것 없는 우리는 몸뚱이 내던져 싸운다

39개 사회단체, 노점상 박봉규 씨의 죽음을 불러온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의 사과 촉구 (9.9) / 중증장애인 12명, 시청역 1호선 선로 점거 ‘발산역사고’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9.11) / 한국까르푸 노조원 정향숙, ‘노조단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 (9.13)

6. 기타 :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 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 (9.11)

● 주요 판결 : 서울지법 북부지원(판사 박범석), “피의자의 신원확인 위한 경찰의 지문날인 강요는 위헌”…경범죄처벌법 ‘지문체취불용’ 조항 위헌제청 결정 (8.3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법,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1980년 7월 11일 변 씨와 김 씨는 이모 청주보안감 호소 소장의 지시에 따라 고무호스로 입에 짠 소금물을 투여하는 강제급식을 당한 후 각각 같은 날 밤 10시 30분과 저녁 7시 50분 경에 사망했다. 당시 청주보안감호소 수용자들은 △사회안전법 폐지 △보안감호제 철폐 △피보안감호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당시 감호과 변모 계장은 의문사위의 조사 과정에서 강제급식에 사용된 것은 “맹물에다 왕소금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속이 타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의문사위는 “사회안전법은 양심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한 변형만과 김용성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적극 항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의문사위는 “당시 강제급식은 수용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행해진 고문에 해당한다”라며 “이들의 사망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지난 8월 29일 고문을 수반한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최석기, 박웅서, 손윤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것은 인정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주영)

### ○ 사회안전법이란?

75년 7월 16일 새벽 3시 날치기 통과된 사회안전법은 당시 출소 예정 됐거나 형기가 만료된 비전향자들을 가두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75년부터 78년 사이 150여명이 이 법에 따라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 법무부가 매2년마다 처분 간접 여부를 결정했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기한없이 가두어둘 수 있었다. 사상탄압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문사위는 최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경우 사상 시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

2002년 9월 18일(수)

제 21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월~금 주중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 (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 비율은 50%이며 이를 ‘초과근로 할증률’이라 부른다. (법 55조) 또한 사용자는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다. (법 52조)

노동자들이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연월차·생리 휴가를 모두 쉰다면, 현행 법 아래에서도 총노동시간은 1천9백80시간 정도가 된다. 그런데 실제 총노동 시간은 약 2천5백시간으로, 노동자들은 연간 5백20시간의 초과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는 한국사회에서 초과근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면에서 계속)

‘발산역 키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축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38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편집자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지 점검해볼 기회는 없었다. 인권의식은 배우지 않아도 터득되는 것일까? 후속활동을 뛰어넘어 예방 차원의 인권운동은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안고 〈인권하루소식〉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인권교육’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 한다.

“아이들 또한 존엄한 인간이라 여긴다면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실현해야 할 가치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더라도 학교라는 문턱을 넘으면 생각과는 판관인 세계가 펼쳐진다.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시되는 그들의 인권! 나는 인권이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감으로나마 아이들의 인권이 놀려 있는 구석을 찾아보련다. 바로 거기서 아이들의 인권이란 텃밭이 일궈질 거란 믿음으로”(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회원의 글 중에서)

혜화동의 한 카페에서 토론에 끝 빠져있는 짧은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매주 모임을 갖고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아래 인권교사모임)’의 회원들이었다. 20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인권교사모임은 98년 인권교육에 열렬히 빠져든 한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후 9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인권교과서 시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재량활동시간이나 인권 항목과 통합이 가능한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사용 지침서 제작, 학급운영에서의 인권교육 등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들이 꼬박 2년 동안 매달려 만들어낸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을 위한 인권교육 교사용 지도서가 출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단지 총휴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다. 총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 한도를 보다 축소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 사용자들이 초과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는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초과근로를 원한다면,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II.O 조약에 제시된 할증률 25%까지 우리나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II.O 조약에 정확히 ‘25%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25% 이상”이란 규정이 이보다 더 높은 할증률을 낮추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단서규정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이 50~2백%, 미국 등은 50~1백%이며, 일본은 25~50%의 할증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낮추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97년 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협용조항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2007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사실을 기억한다. 따라서 ‘3년’이란 단서조항은 언제 5년, 10년으로 연장될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재계의 논리에 놀아나지 말고, 초과근로 시간 한도와 할증률을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법용)

“머리를 때리려고 했더니 ‘스탑(stop), 인권교사가 때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심지어 울기도 했어요. 33명 중 25명이 자기 얘기를 한 경험도 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자기 경험과 생각’을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개별교실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학교측의 특별한 제재는 없었으나, 뭔가 공개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는 그렇지만도 않았다. 인권교육이 ‘너무 좌파적이지 않냐’면서 공개수업을 못하게 하고, 인권교육반 동아리 활동도 안된 것이 그 예이다.

정부가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길법한 이들이지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짧은 기간에 물량 투여로 하지 말자, 더 많이 준비하고 모색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온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달식이 아니라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학년용 교과서를 끝내고 숨돌릴 틈 없이 인권교사모임은 저학년용을 만들고 있고, 여러 분과 별로 활발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활동내용은 인권교사모임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inkwon.edu.x-y.net)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lt;노평&gt;

##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던 등불이 꺼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이 지난 16일로 끝나버렸다. 22개월 동안 위원회는 국가권력이 유린한 생명과 은폐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박영두, 최종길, 김준배, 인혁당 사건, 허원근… 중앙정보부, 군, 경찰, 교도소 등의 폭력과 고문, 조직적인 사건은 폐의 조각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진실에 눈을 떴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악행에 소스라졌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미약한 조사권한은 막강한 권력으로 무장한 기관의 입을 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총 83건의 조사대상 중 김성수, 박창수, 이철규, 장준하 사건 등 30건에 최종적으로 진상규명 '불능' 짚지가 불게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활동시한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짓고 있는 의문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치 죽음에도 경증이 있는 양 의문사의 개념을 협소화한 것은 과거청산의 범위를 스스로 한계짓는 일이었다. 군이 조직적으로 죽음의 진실을 조작·은폐했음이 밝혀져 국민을 분노케 했던 허원근 일병 사건. 지금 그 사건은 33건의 '기각' 리스트에 올라있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죽은 건 맞지만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란다. 죽음에 대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죽은 자의 명예가 회복되길 커녕 '기각'이라는 판정 아래 망자와 유족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게 된 셈이다.

허 일병 사건은 그나마 진실이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또 다른 수많은 주검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의 벽 앞에서 진실규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한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란 올가미는 위원회의 '양심'마저 뒤흔들었다. 위원회는 73년에서 76년 사이 전향강요를 거부하다 사망한 최석기·박웅서·손윤규 씨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향을 거부한 행위만으로 민주화운동이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가 내세운 근거다.

그러나 이는 "권위주의적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만으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됐던 최종길 교수 사건과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상반된 결정의 근거라면 그것은 위원회 스스로 레드 캠퍼스와 사상검열의 벽 앞에 무릎꿇은 비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어렵사리 밝혀진 죽음의 진실마저도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란 모호한 기준 때문에 희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죽음의 가치가 매겨지고 진실규명의 기회조차 제한되는 일은 '민주화된' 사회에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했던 숨죽이고 있었든, 무슨 사상을 품었던 간에 공권력에 의한 모든 죽음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권한강화와 기간연장, 그리고 의문사 범위의 확대. 이상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골자여야 한다.

진실을 향한 등불을 다시 밝혀라. 그리고 골고루 비추게 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 9. 19

'발산역 키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 39일째  
국가인권위 11층,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

110 &lt;인권하루소식&gt; 학본 19호

2002년 9월 19일(목)

제 21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노동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해진 총노동시간 안에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노동시간이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 52조 2항과 3항에 의해 무력화된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합의 아래 노동시간을 1주 68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시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1주 68시간 노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현실인지는 조금만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월~토 6일 동안 매

일 11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68시간이 나온다. 여기서 점심·저녁시간을 1시간씩 포함시키면 그 주 노동자들은 13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다음주 내내 유급휴일을 준다고 해도 결코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예를 들어, 1달 임금 1백만원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는 월~금 주중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한다고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다. △월 1백만원의 안정적인 수입 △규칙적인 노동에 따른 여가생활의 영위, 이것이 노동자의 삶의 토대일 것이다.

하지만 하루 업무량이 늘상 똑같지 않아, 어떤 때는 하루종일 노동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루 4시간만으로 일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아마 4시간만으로 일이 끝나는 날은 다른 때보다 여유있게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8시간을 초과해 노동함으로써 애초 기대했던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을 때, 사용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초과근로 할증률'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다른 날 법정근로시간에서 빼 주겠다는 탄력근로제의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 첫째, 초과근로를 하면서 침해받은 여가생활이 다른 날 그만큼 덜 일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둘째, 초과근로시간 만큼 다른 날 덜 일하는 것은 침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보상 방식도 아니다. 셋째, 노동자들은 이전의 장시간 노동에 따라 다른 날 좀더 여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여기에 재계는 한 솔 더 떠, 아직도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불규칙해지고 초과근로수당만큼의 임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는 애초 장시간노동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취지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조치다. 도내 대체 주5일 근무제와 탄력근로제가 무슨 관계란 말인가? 정부는 재계를 달래기 위해 주5일제 도입을 조건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범용]



##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장애인단식농성 38일 경과

장애인이동권투쟁을 이끌어왔던 엄태근 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 경 서울시청 안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은 시청 앞에 나타난 엄 국장을 덮쳐 남대문서로 이송했다. 엄 국장을 연행한 경찰책임자는 '현행 법 체포'라고 주장했다. 이날 밤까지 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점검 단식농성이 4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엄 국장의 구속여부는 농성 장기화 등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창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9월 19일(목)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 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속보〉

지난 8월 12일부터 39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의 농성투쟁이 종료됐다. 이동권연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산역 사고 책임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법적투쟁으로의 전환 △서울시가 밝힌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대책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전명하며, 농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도 단식을 풀었다.

### 발산역 사고 책임 규명, 법적투쟁으로 전환

이동권연대는 이번 농성의 첫번째 목표였던 서울시측의 공개사과를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5월 19일 발산역리프트사고로 지체장애인 윤재봉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동권연대는 줄기차게 서울시측의 책임인정과 공개사과를 요청해 왔다. 일각으로부터 명분에 집착한 요구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서울시가 이동권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서울시측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어 겪어야 했던 불편함과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솔직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회피한 것"이라며 서울시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권연대는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소송제기 등 법적투쟁을 통해 서울시 책임규명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발산역사고 현장검증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 서울시, 9월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추진협의회 구성 약속

서울시측이 18일 발표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약속은 이번 농성투쟁이 얻어낸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동권연대의 농성돌입 이후 서울시는 8월 28일 최초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료 서틀버스 운영·심부름 센터 운영·휠체어 콜택시 도입'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으나, 이날 발표한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9월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추진협의회' 구성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교통전문가, 연구기관, 기술진, 시내버스조합, 시의원, 시관계자 등 17명 내외로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를 통해 저상버스 도입·운영방안, 기술적 조건, 도로 및 부대시설,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추진일정,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2004년까지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확인받은 것 역시 소중한 성과다.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감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대책이 우리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경석 대표, 병원 입원

39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마무리와 함께 안국동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단식중에도 집회에 계속 참여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박 대표는 18일 혈당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는데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병원에서 2~3일 이상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연행된 엄태근 이동권연대 사무국장 등 3명의 활동가들은 19일 낮 12시경 모두 남대문경찰서에서 풀려났다.

### 결연한 의지 다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의 종료를 선언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장(농성장)엔 평소와 달리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취재를 위해 참석했다. 농성 정리 소식을 누구보다도 반가워 한 국가인권위 직원들도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봤다.

####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요지>

● 류흥주(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위원장)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단지 버스 몇 대와 지하철 몇 대를 얻고자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 장애인과 서울시장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밝히고 싶었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국가기관까지 점거한 사실이 후대에는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증장애인 누구나 자연스럽게 서울시내를 활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9월 11일 서울시청역 선로점거투쟁에 참여했던 전신지체장애인 김영주 씨. "4년전 교통사고로 전신지체장애인인 됐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언제 사회적 약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선심'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봤지만, 10년~20년이 지나도 방에만 쳐박혀 지낼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것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선로를 점거하면서,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랬다."

● 박경석(노들장애인아학 교장)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을 때, 지하철 1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해 하는가를 봤다. 그러면서도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무감각한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죽고 다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충분히 민감해야 한다. 오늘 농성은 접는다. 하지만 발산역 사고의 진실을 가릴 때까지 우리 투쟁은 계속된다. 그동안 우리의 농성을 인내해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린다."

###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관련 투쟁 및 국가인권위원회 무기한 단식 농성 경과>

- 2002. 5. 19.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남, 63세)씨가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 20일 사망.
- 2002. 5. 24. 도시철도공사 항의방문 투쟁
- 2002. 5. 31. 발산역 항의방문 및 월드컵 경기장 진격투쟁 진행
- 2002. 6. 14.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항의방문(장애인이동권연대 공식 요구안 전달)
- 2002. 7. 1. '발산역 참사 공개사과 촉구 광화문 천막농성' 돌입-특수기동대에 의한 폭력 진압으로 무산, 총 38명 연행
- 2002. 7. 5.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동대문운동장 환승역 서명운동 돌입 (8/10일까지 진행)
- 2002. 7. 29. 발산역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서울시장 면담  
-면담 결렬, 서울시청 식당 점거농성 돌입 (7/31까지)
- 2002. 8. 12. 발산역참사 서울시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2002. 8. 20.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2. 8. 26. '발산역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이동권쟁취 결의대회' 진행 (덕수궁 대한문 앞)
- 2002. 8. 27.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1차 온라인 시위
- 2002. 8. 28.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장애인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 배포
- 2002. 8. 29. 서울시 본회의장 진입 기습시위 진행
- 2002. 9. 2. 한나라당 이회장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1차) 발송/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2차 온라인 시위
- 2002. 9. 6. '제1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 진행 /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3차 온라인 시위
- 2002. 9. 11. 1호선 시청역 선로점거 투쟁(총 76명 연행, 28명 불구속,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 박경희씨 구속)
- 2002. 9. 14. 한나라당 이회장 대선 후보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및 면담 요청서 발송
- 2002. 9. 15. 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 시사회 개최(장소: 광화문 아트큐브)
- 2002. 9. 17.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단식 35일째임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시청 앞 1인 시위 시작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30만명 돌파 (9/17 현재 300,392명)
- 2002. 9. 18. 서울시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단 서울시청 항의방문(엄태근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등 3명 연행)
- 2002. 9. 19. 박경석 대표 단식농성 및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해제. 엄태근 국장 등 3명 석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경찰이 현법재판소(아래 현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현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청은 추가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데 반해 전과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의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는 일본의 검거율이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데 반해 한국의 검거율은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범인명수'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은 사건발생 건수와 검거 범인명수에 대한 통계만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강간사건 발생(건) 수는 6천7백51, 검거(범인명) 수는 6천21로, 얼핏 검거율이 89%인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같은 해 살인사건 발생(건) 수는 1천51, 검거(범인명) 수는 1천760이므로,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1백2%가 된다.

또한 경찰청은 "미국도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동일인 확인을 위해 우수무지(오른손 엄지)를 날인받으며, 한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40%에 비해 미국인은 66%로 주민증이 없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민증과 같이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

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청의 주장은 마치 66%에 달하는 미국인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은 범죄나 대형사고의 경우 "지문에 의해 손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국민의 지문수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연대는 "(경찰청이) 다른 수사방법들에 대해 비용과 효율을 운운하면서 지문감식이 가장 훌륭한 수사방법인 것으로 과장"한다고 꾸짖었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 활용현황'에 따르면, 2001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의뢰 건수는 2

2002년 9월 24일(화)

제 21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만3천3백66인데 반해 신원이 확인된 건수는 4천1백78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실적은 저조"라고 경찰청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반대연대는 경찰청의 추가의견서에 대해 "통계를 고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왜곡하면서까지 지문날인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분노를 표했다. 반대연대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정리해 현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항에 의한 지문날인제도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99년 9월 현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법용)

### 쟁점! 주5일 근무제 ⑤

####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I.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며,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말로 '과보호'되고 있는가?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9.7%가 비정규직이고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때문에 지탱되고 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될 경우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2000년도 기준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87만3백98원에서 생리휴가일의 급여(통상시급 3천8백51원\*8시간) 만큼을 빼면, 월 평균 3.1%의 임금이 삭감된다.

게다가 정부는 전체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업체 종사자에 대해서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법률에 못 밟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여성노동자의 69.1% (2000년 기준, 통계청)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생리휴가무급화는 여성노동자들이 임금보전을 위해 되레 장시간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과보호'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란 이렇다. (이주영)

###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삭 내려앉은 9.11 사건이 난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의 아프간 난민캠프에 있었다. TV에선 하루 종일 미국의 슬픔과 비장함을 장황하게 방송하고 있었지만,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미국의 테러로 폐허가 된 집과 고향을 떠나 1년째 구호물자로 연명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간은 지난 20여 년 간 전쟁이 끊이지 않은 비극적인 땅으로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 처음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온 아프간 난민들로 난민캠프가 세워진 이후 소련이 물러간 후에도 아프간은 끊이지 않는 내전으로 난민들은 계속 존재했다. 지난 9.11 사건으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해 또다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불행의 연속 속에 아프간인들의 삶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피폐해진 상태였다. 올 2월 최고에 달했던 난민의 수는 파키스탄 내에만도 300만 명에 달했고, 그 중 절반 정도만 UN이나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고 있었다. 밀가루와 오일, 소금, 하루 물 15리터씩 등 가장 기본적인 식량만을 지원 받기 때문에 행여 식량이 모자랄 새라 아껴먹어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한 달에 500루피(한원)를 벌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페트를 짜야하는 난민촌의 아이들과 아프간 여인들을 보고 돌아온 후, 한국의 흥청망청한 생활들은 마치 죄악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아닌 곳에서 살면서도 맑은 웃음과 눈동자를 가진 아프간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안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아프간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들과 기금을 모았다. 어린이옷과 학용품, 생필품 등 물자는 부산가톨릭교구와 JTS (Joint Together Society), 양산효암고등학교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7월 27일 컨테이너에 실어 보냈고, 모아진 기금은 난민캠프 어린이들의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난민캠프 방문은 배편에 실어보낸 물자들의 전달을 확인하고, 난민캠프 어린이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금 전달을 위해 방문한 셈이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국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남의 나라 사람들까지 돌볼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을 하신 분도 있었다. 과연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데 국적이나 민족, 인종의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나의 고민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면서도 먼 곳에서 찾아온 외국인 손님에게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 따뜻한 난민 가족들의 찢어진 텐트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1. 장애인 39일간의 농성, 저상버스 결실

장애인동권연대, 농성투쟁 끝내…서울시 상대 발산역 리프트 사고에 대한 법적투쟁으로 전환(9.19) / 서울시, 차체의 밑부분을 일반버스보다 낮게 해 장애인이 훨씬 더 쉽게 승하차할 수 있게 하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도입하기로 하고 9월 말까지 '추진협의회' 구성(9.19)

#### 2. 조사시한 막차 타고 세상 나온 진실

의문사위, 91년 입원 중 추락사한 전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 박창수 씨 사건에 안기부 개입 혼석있다고 (9.16) / 의문사위, 81년 삼청교육에 집단저항 중 사망한 전정배 씨의 죽음 '의문사'로 인정→삼청교육대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 권고(9.16) / 의문사위, 사회안전법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 이 법의 폐지 주장하며 70년 옥중에서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당해 사망한 변형만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9.17)

#### 3. 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못하니…

정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 명칭도 '노조'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법률안 확정(9.16) / 공무원노조, "정부안 국회상정 시 파업 돌입"(9.17)

#### 4. 전쟁 위기 한 고비 넘기나

이라크, 유엔무기사찰단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9.16) → UN, 이라크 무기 사찰 논의 시작(9.17) / 유엔·미국·러시아·유럽연합,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내용의 3단계 중동평화안 채택(9.17)

5. 기타 : 경희의료원, 파업 119일만에 타결…△파업기간 임금 중 45% 지급 △병원 정상화 이후 30일 이내 민형사 및 손해·가입류·고소·고발 취하 △사학연금 관련 노사 공동위 설치 논의하기로 (9.17) / 중국인산업연수생 46명, 안산 염색업체 노사 앞 5일부터 농성…주야 맞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 2만원 지급(9.17) / 교도소, 재소자들의 '징벌방 수감' 남발…2001년 7개월 동안 7천1백27건(9.18) / 미2사단, 인권침해 관련 조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가 내린 과태료 1천만원 납부처분에도 불응(9.20)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 아주노동자 산업재해자 수 99년 715명→2000년 1197명→2001년 1491명, 사망자 수 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57명으로 증가(노동부) / 중기협 산업연수생 관리수의 6년간 565억원(중소기업) / 현재가 88년 설립 이후 위헌 결정 내린 각종 법 조항 269건 가운데 19.7%인 53건 정도가 개정·폐지되지 않은 채 방치(한법재판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0.35%)이 정규직(0.21%)에 비해 월씬 높아…4월 468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시 결과(노동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지금까지 학교에서 우리 용역아줌마들을 인간 대접도 안 했어요.” 24일로 61일간의 투쟁 끝에 학교측과 노사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대 미화원 노동자 박영희 분회장을 말했다.

박 분회장 등 미화원 노동자들은 새벽 6시 30분에서 7시께 출근, 하루 꼬박 일을 하고도 손에 쥐는 돈이라고는 47만원을 겨우 넘는 최저임금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 9월 1일 이전 1년간 최저임금은 47만4천6백원. 지난 해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3년을 일하건 6년을 일하건 마찬가지였다. 박 분회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소장이 8시간 이 아닌 7시간 30분 일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몄다는 사실을 올해 초 노조에 가입하고 난 후에야 알았다”라고 말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로 책정하는 편법도 동원됐다. 박 분회장 등은 여러 해를 인천대에서 일했지만, 이들이 소속되는 용역회사는 매해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원증은 11개월 17일, 올해 (주)기륜은 11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노동자들은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도 받을 수가 없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황영미 부지부장은 “이런 부당한 처우는 원청인 인천대학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청소·인력관리·임금 등 일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면서도 노동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6년 전부터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해왔다. 황 부지부장에 따르면, 미화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것도 인천대가 용역업체들과 1년이 아닌 11개월 단위로 도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금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맴들거나 이에도 못 미치는 것도 인천대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를 매우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화원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3일부터 인천대를 상대로 △과거에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 △인간다운 임금 보장 △위장 도급 철회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해 왔다. 박 씨 등은 이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과와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박상희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 2002년 / 83쪽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제출과정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유엔 사회복지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필자는 사회보장권과 취약계층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 차례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한국 사회복지계에 긍정적인 제도·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1차 보고서 검토 후, 95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6년이 경과한 2001년, 1차 권고의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등이 눈에 띈다.

필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론화 작업이 한국정부에 압력수단으로 작용해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회보장 변화와 사회권위원회 권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며,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한 한국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 후 사회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통해 개별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은 정부개입 축소,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주도함으로써 사회권의 후퇴를 가져온다. [최은아]

2002년 9월 25일(수)

제 21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 44시간씩 1달에 1백76시간을 일하고 1백76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A가 받은 임금 1백76만원은 실제 노동한 1백76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된 2백8시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A의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천4백61만원 정도가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현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휴일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는 유급으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지구상에 유급주휴를 실시하는 나라는 태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뿐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를 무급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급으로 8천4백61원을 받던 A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1달에 40만6천1백28원의 임금이 삭감된다. 이는 이전 임금 1백76만원의 23%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입법예고안 부칙에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며 △임금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가 알아서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다.

예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오늘날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결코 삭감될 만큼 풍요롭지 못한데도 말이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97년 이전까지 유급휴일 제도를 무시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와 같은 경우 당시까지는 시급이 1만원으로 계산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97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급 산정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한푼도 더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를 외면하고 무급주휴에 따른 임금 삭감을 바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재계는 임금하락에 따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서 희망하겠단 말인가? (범용)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교육의 주체로, 교육운동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현장에 분노하는 것은 흥 선생님이 일찌감치 경험한 데서 나온 결론이다. ‘나홀로’ 국장이지만 흥 선생님이 꿈꾸는 것은 많다.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인권적인 분위기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학교현장 인권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내 초등학교의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할 조사사업에 대해 흥 선생님은 전교조라는 조직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흥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건 아직 다 계획이다. 현장교사 위주로 인권실천사례집을 만드는 일과 겨울방학 직무연수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갈등해결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은 많이 있어왔지만 인권교육에 집중한 직무연수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주체로, 교육운동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거리두기’를 극복하고 학생자치를 위해 지원하는 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학생인권을 옹호하다보면 교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왕따가 된다’는 두려움을 깨고 열린 마인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흥 선생님의 태도는 전교조 내 인권교육의 가능성일지, 드물고 돌출적인 발언일지 주목된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해선 병무청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사권도 검사와 경찰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검사나 경찰만으로 범죄의 수사가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통부와 병무청은 '단속의 효율성' 이외에 사법경찰권이 왜 필요하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과장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유통을 막기 위해 선 전문성을 갖춘 정통부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병무청 공보 담당관은 "사법(경찰) 권이 없는 상황에선 병역기피자를 색출한다든지 (방위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주를 조사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직접 단속을 하려니까 어

려운 것 아니냐"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인신구속을 위해 직무 교육을 받는 경찰도 인권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황"이라며, "약간의 전문성을 이유로 사법(경찰) 권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는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 장소에서 이뤄지곤 하는데 수사를 명목으로 정통부 직원들이 비공개적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범용)

④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장시간노동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정작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인데, 그 시행일정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약 7백9십7만5천292명으로 전체 노동자 1천3백6십만4천274명의 58.6%에 달한다. (2000년 기준 통계청) 정부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김에 관리직·전문직·영업직에 대해선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말자고 지난 19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들 노동자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없어진다. 이미 그 폐해는 건물관리노동자들의 현재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24시간 맞교대나 3교대, 휴일에 일을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들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피로나 긴장이 적고 근무 시간 내내 일감이 있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감시·단속적 노동자'라 분류해, 근로시간이나 휴일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기법 제61조) 이들의 현재가 다수 노동자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이주영)

2002년 9월 26일(목)

제 21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10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협소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매주 한 차례씩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결정사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의 내용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선 각종 위원회의 주요한 논의 및 결정사항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상임 3, 비상임 7)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단위로서 △위원회 운영 △예결산 사항 △위원회 규칙 제·개정 △구제조치 권고 △소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공개 안건〉

-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9/9)
-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권고(9/9)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8/12)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의견(8/12)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보 관련 사항 검토(7/22)
- 월드컵대회 관련 '인권현장 확인반' 활동보고(7/22)
-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입법조치(7/22)
-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보장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7/22)
- 위법수사에 대한 정책권과 계획(7/22)
- 군인사법시행규칙 중 '외모차별' 검토(7/8)
- 성전환자 호적정정법률안 검토(6/24)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 결과보고(6/11)
- 여의도성모병원 공중보건의배치요구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6/11, 5/27)
-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5/27)

침해 소위나 차별 소위의 경우, 논의사항은 물론 논의안건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인권위 각종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바 있다. (이창조)

#### 〈전원위원회 비공개안건〉

- (괄호안은 논의일자)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 차별(9/23, 9/9, 7/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22)
-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 판사 임용 차별(9/23, 9/9, 8/22)
- 진주교도소 인권위 진정방해(9/9, 8/22)
- 나이를 이유로 한 교수모집 차별(9/9, 8/22)
-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7/11, 6/27, 6/17)
- 인권위 조사업무에서의 입증책임 전환(7/25, 7/11)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7/25)
- 의결서의 소수의견 기재 등(7/25)
- 인권관련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방안(6/27, 6/17, 5/23)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5/23)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5/23)
- 불공정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5/9)
-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4/25)
-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4/25)
-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 사건(3/28)
-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3/28)
- 회의공개에 관한 건(3/14)
- 면전진정 요구 건(3/14)
- 장애인승진차별사건에 관한 건(3/14)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물음표】

##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 인권영화 제작!” 9월 9일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영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어 9월 12일 각 언론사에는 ‘인권영화 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박광수, 박찬욱, 송해성, 여균동, 이현승, 정재은 감독 등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영화감독 6명이 각자 10분 내외로 옴니버스 형식의 단편영화를 제작해 60분 분량의 인권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였다.

‘우리 사회의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이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폭넓게 창작활동을 펼쳐온’ 것이 선정된 감독들의 ‘자격’이었다.

남규선 공보담당관에 따르면, 감독들이 저마다 작품의 소재를 선정하게 되며, 올 10월말까지 시나리오를 완료해 한 달만에 촬영 및 제작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완성된 작품은 국내 개봉관 상영을 목표로 하고, 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할 계획이라고 남 공보관은 밝혔다.

여기서 드는 두 가지 의문. 첫째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아래서 영화관의 바닥을 기며 ‘인권영화’를 제작해온 독립영화감독들은 왜 빠져있을까라는 점. 인권위가 정한 이번 영화의 주제는 ‘차별’이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미 각 영역별로 꾸준히 인권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많은 전문감독들이 존재 하지만, 그들 대신 ‘상업영화’에 주력해 온 감독들이 선택됐다. 선택의 기준이 인권감수성이 아닌 ‘대중적 인지도’에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두 번째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아마도 연말까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특성에서 나타난 일정표로 보이는 데, 과연 길거리에 보도블러를 깔 듯 ‘영화제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애초 기획한 만큼의 내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울 길 없다.

9월 23일 전원위원회에는 또 하나의 기획이 보고됐다. 이른바 ‘인권만화집’의 제작. 인권영화의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만화작가들이 제작자로 참여한다고 한다. 이희재, 조남준, 유승하, 최호철, 손문상, 박재동, 흥승우씨 등 민중미술활동이나 주요 언론사 시사만화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면면들이다. 하지만 역시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이 치우친 인상이다.

‘졸속’의 우려 역시 인권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 9월중으로 기획을 마치고 11월초까지 원고를 완성하며 12월말에는 배포를 하겠다는 것이 인권위의 야심찬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만화집의 유가배포계획을 놓고 인권위원들 간의 논란이 벌어졌다. 공보관은 “대중들의 관심

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참여작가들의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행본 유가판매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몇몇 인권위원들은 “유가지 판매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춘다면 무가지 배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시성’ 행정이 아닐까 이런 저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괜한 짐작일까? [이주영]

##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1. 연소자순 합격처리 관행, 첫 시정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는 2002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가톨릭대의 조치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해 구제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다.

##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학생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교육부 예시안과 관련, 인권위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3. 진주교도소장 등 징계 권고

9월 2일 인권위는 최소 10여 차례 이상 수용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4월 수용자 이모씨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하자 진주교도소측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전방시키겠다”는 등의 압력을 통해 진정취하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법 57조에 따르면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철도노동자 추락사.. 휴일없는 작업, 추락방지 안전망도 없어

수해로 끊어진 철교 복구작업 중 한 철도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조차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3시 40분경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가 강원도 동해 미로역과 도경리역 사이 오십전 2교량에서 보수작업을 하다 12미터 아래로 끊어진 철교를 복구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기둥을 다시 세우고 자갈, 침목, 레일 등을 새로 깨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철도청에 따르면, 정 씨는 철교 위에서 크레인으로 옮긴 자재를 내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철도청은 12미터 높이 교량 위에서 아슬아슬한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추락의 위험에 방지돼 있었다. 노조의 서재열 시설국장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땐 안전그물망을, 모든 터널에 작업을 하다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노조가 주장했는데 철도청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철도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유난히 잦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한해 업무와 관련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34명, 올해는 9월까지 6명이 사망했다.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휴일 없이 수

해복구 작업을 강행했던 것도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다. 노조의 이 산업안전차장은 “수해복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보니 몸의 피로가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물 관리·보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5년 동안 9백여명이 인원감축돼 현재는 2천4백명. 반면, 단선철로가 복선이 되고 또 복복선이 되면서 시설은 계속 늘어 노동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작업량은 훨씬 늘었다.

최근처럼 집중적인 복구작업을 해야 할 땐 노동자들이 휴일도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노조의 서 시설국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 간 아침 7시에 출근, 밤 9시 늦게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다. 노조의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앞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철도청의 책임을 규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주영]

여동수



##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습성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명령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음성감독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감시장치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금지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밤 10시 이후 전화를 걸어, 수신자의 음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수신자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사회에 보급될 때 그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급이 중단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 센터 최영희 부장은 "성매매 상습범이 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감시당하는 게 인권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충격을 금지 못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란 개념도 잘못됐다. 청소년들은 미성년 자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원조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습 성매매 청소년은 법무부가 음성감시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표적인 재범방지 대상으로 지목한 범법자다.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성매매 고 있다. (박종모)

성폭력 사범에게 적용되더라도, 재범이 방지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정유석 인권부장은 "성폭력 사건은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며, "야간에 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최영희 부장도 "성매매가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전화를 걸어 재범을 방지하겠단 말은) 어폐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행사정책연구원의 전자감시제도 연구자는 "결국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 (전자감시제도) 성공여부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 참정권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거리홍보에 돌입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격주 토요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후엔 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원 증명을 거부해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는 "다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릴 것"이라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여론을 모아 참정권보장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제도 폐지와 (성별,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개신을 일제히 실시한 이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올해 6월 30일 기준 52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 집계된 거부자 수는 9월 25일 현재 2천명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윤현식 씨는 "제도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현 주민등록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합으로써 간접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던 68년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됐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민등록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7월 24일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매주 화요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모)

무부 관찰과 관계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상자 선정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현재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음성감시장치의 물리적 결함을 확인 중이라고 한다. 내년 상반기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 2천7백만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도 모호하고, 재범방지의 실효성도 미지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지만, '자동음성감독시스템'은 이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조용히 현실화되고 있다. (법용)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번호 7618848
- 국민은행 015-21-0723-021 (서준식)
- 우체국 010025-0189806 (서준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육군교도소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복도는 물론이고, 기수수·미결수를 막론, 각 감방에 1대씩 설치돼 있다. 감방에는 군 내부반처럼 복도 양쪽에 침상이 설치돼 10여명이 생활하며, 한쪽 벽에 고정된 감시카메라는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다만 감방 안의 화장실은 카메라의 감시범위 밖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월아갔다 하는 것과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며,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혼자 있을 때도 감시카메라에 노출된다는 것. 이어 "(만약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나 육군교도소 쪽은 보안 또는 취재절차를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제공조차 거부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육군교도소는 "현황 자료들은 보안성 검토가 이뤄져야 제공할 수 있다"며, 답변 책임을 상급부대로 떠넘겼다. 감시카메라 설치 연도 및 취지 등 기본적 질문에 대해 육군본부 현병관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육군본부 법무관실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

2002년 9월 28일(토)

제 21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도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홍씨는 육군교도소를 몇 차례 더 방문, 보다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설치의 법적 근거 등 자료도 요청할 예정이다.

군교도소 외에, 인천구치소 등 신설 교도소에도 감방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법용)

###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 주연한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때름이다. 아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놓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대학의 헤이데 교수와 미국의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찌 등 해외의 진보적 인사들이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마 나라밖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이 법률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인권의 불모지'일 뿐이다.

반면 나라밖에선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반세계화 시위와 관련, 각 나라는 외국인들의 입국과 시위 자체를 봉쇄하진 않았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민간인학살 사과'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미국의 시내 한복판에서 벌이기도 했다. 이들에 비하자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처지가 너무도 초라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민족적 출신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표현이 제한돼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지금은 강제추방 운운할 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반인권 법령부터 서둘러 개정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하길 바란다.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에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노동부안도 그렇지만, 더 개악될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일단 유동적이다. 재계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정부안이 자본측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 이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투쟁을 통해서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이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다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쟁점이 될 것 같다. 주5일근무제는 국민적 관심사여서 대선 시기에 대통령 후보 누구든 언급을 할 것이고, 집권 초기인 내년 봄에 법안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또한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투쟁에선 각 사업장별로 주5일근무제가 주요 논의로 등장할 것이다.

○ 단협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현황은?  
단협을 통해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곳이 많다. 금속사업장 중 현대·기아·

쌍용, 한라·한진중공업 등이 42시간 노동으로 줄었다. 사무연맹이나 화학쪽도 있고, 단협으로 4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인 데가 조합원 수로 보자면, 민주노총 내에 절반이 넘는다.

○ 단협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의 의미와 한계는? 향후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조건을 개악시키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현장에서 주5일제를 일반화하면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그러나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개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조직율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 정도는 여기서 제외되는 셈이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단협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단체협약을 기반 삼아, 노동

조건의 후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법 제화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정리 : 이주영]

###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절망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석범 위원은 "군 내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종모)

### ◊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장애인의동권 투쟁 영상 보고서

장애인의동권 투쟁에 대한 영상 보고서가 나왔다.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팀인 다큐인에서 최근 내놓은 이 기록영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전모를 담고 있다.

작년 1월 오이도 리프트 참사로부터 최근 발산역 사고까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은 목숨을 걸어야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작품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동권이 얼마나 천시되고 소외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작품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의 한스러운 사연이 곳곳에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건교부, 총리실 등을 수없이 방문하면서 정부로부터 책임있는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푸대접받은 이들은 대국민홍보를 위해 집단적으로 지하철을 탈 때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구박을 받아야 한다. "시민을 불모로 삼고 집단행동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몇 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는 이기심 앞에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 '이동권' 확보가 쉽지만은 않으리란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작품은 마치 액션영화처럼 폭력적인 장면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사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받아온 사회적 천시에 대한 분노와 정부의 무성의함으로 인해 이들의 투쟁은 철도점거, 도로점거 등 극단적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소수자들이 몸을 내던지는 투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음에도, 작품에서 보여준 폭력 상황은 경찰들이 소수자의 참담함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곧 인권의식이 전무함을 또다시 깨우쳐준다. 쇄사슬을 목에 걸고 버티고 있는 장애인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장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은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다 죽은 고 최옥란 열사에게 바쳐졌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 2002년 10월

### (제2185호 ~ 제2206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0월 1일(화)

제 21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22년째 방치돼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영순)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삼청계획 제5호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강제노역과 구타를 가하며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는 “삼청교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비상계엄 상태에서 실시됐”고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죽음에 까지 이르렀다”며 삼청교육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속히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 역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의한 삼청교육은 헌법과 행위의 죄악의 유형이고 그 피해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마땅히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껏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안이 89년부터 13·14·15대 국회에 세차례 제출됐으나, 국방부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매번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해 8월 피해자들이 또 입법청원했으나 1년이 넘도록 무응답이

제정을 위한 여론화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당부했다.

19살 때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머리를 다쳐 힘들게 살았다는 한 방정객은 “88년에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 보상 없이 14년이 흘렀다”며 “우리를 농락한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후,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회원 30여명은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저녁 5시께부터 5시간 여 집회를 열고 “삼청교육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집회는 1주일간 계속된다. [이주영]

##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이화여대 총학생회(회장 윤혜정, 아래 이대총학)가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신상폭로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대 권지현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문화관에서 앙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지선언을 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모 대선 후보와 나눈 이야기가 발단이 됐다. 당시 권 부총학생회장은 그 후보에게 ‘군대가 있음으로 해서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시에 여성의 성은 남성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여성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전했다.

이를 ‘군대 비하적’ 발언이라고 생각한 네티즌들은 28일 이대총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여성비하적 폭언과 의미없는 글들로 도배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을 비판하던 한 이대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를 해킹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대총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통신테러는 엄연히 여성 공간에 대한 네티즌의 성폭력”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이대총학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이대총학의 한 집행부원은 “여성들이 군대문제를 제기할 때는 매번 공격을 받아왔다”며, 이번 사건도 “병역거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여자들이 (병역거부에 대해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여성 몇몇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수의 남성들에 폐거리로 둘러쌓이면 당연히 위협감을 느낀다”라며, “사이버상의 성폭력도 기존 폭력과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며, 사이버 수사의뢰 등 이대총학의 대응을 응호했다.

한편 이대총학은 1일 아침 11시 이대 학생문화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이버 베러’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범용]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천국이다. 모든 대중가요가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추어 만들어지고, TV에서 방영하는 쇼 프로그램도 모두 청소년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모든 대중가요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에서조차 이렇게 청소년을 배려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청소년들의 천국이다. TV 쇼 프로그램이 그렇다보니 대중음악 공연도 청소년들이 표를 사서 관람하지 않으면 망하고 만다. 가수들은 청소년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지경이다. 어디 그뿐인가, 월드컵 열풍이 지나간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걸고있는 프로축구 K리그도 청소년들이 성공여부를 완전히 좌우하였다. 정말 청소년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다.

청소년들이 나라의 주인인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청소년들이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다. 커피숍에 한번 가보자. 손님으로 청소년들이 꽉 깔려있다. 더 기이한 것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나르는 사람도 청소년들이 많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커피를 나르는 종업원도 모두 청소년인 것이다. 피자집에 한번 가보자, 사정이 꽉 같다. 하지만 또 사정이 꽉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청소년이 있지만 주인은 절대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주유소에 한번 가보자. 여기서는 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은 청소년이 거의 없는데,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른을 위해서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유소 주인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주유소 주인을 위해 기름을 넣어준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 일당 내지는 시간당 지불해야하는 돈이 주인의 입장에서 무척 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를 쳐도 사회적으로 별탈이 없다. 가끔 일당을 떼어먹어도 별탈이 없으며, 청소년들을 희롱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자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잘라도 청소년이기에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 커피숍에서도, 피자집에서도 사정은 똑같다.

청소년의 천국인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TV 쇼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취향을 조작하고, 공연이 청소년의 돈을 짜내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은 어디에서든지 돈을 구해서 청소년의 천국이 사실인 것을 입증해주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의 천국으로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청소년의 지옥으로 만들고 만 것이다. 그냥 지옥이 아니라 돈 몇 푼으로 청소년을 꽉 잡고 있는 가장 더러운 지옥이 바로 우리사회인 것이다. 더러운 돈 몇 푼에, 청소년의 천국임을 입증하기 위한 더러운 돈 몇 푼에 청소년들의 일하는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만 것이다. 하기사, 천국을 논하는 자리에 인권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종,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 주간인권호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1.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대우조선 노조원,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며 기습시위(9.24) /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 수해철교 복구 중 사망...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 곳에서 휴일 없는 무리한 노동이 부른 결과(9.25) / 기아차노조, 사측이 직업병 여부 판정 시 건강검진 결과 축소·왜곡했다고 주장(9.25)

## 2. 내·외국인 가리지 않는 선진 감시시스템!

법무부, 보호관찰자 야간통행금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자동감독시스템'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논란(9.25) / 대검 공안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터넷상 인공기 게재 및 유포행위를 불허키로(9.27)

## 3. 광팬들에게 법이란 없다

제4차 아셈 참석 25개국 정상,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9.23) / 이스라엘, 유엔결의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정부 포위와 공격 계속(9.24) / 미국과 영국,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초강경 유엔 결의안 초안에 합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프·중·러는 무력사용을 결의안에 담는데 반대(9.26)

4. 기타 : 군가협, 국방부 앞에서 군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요구 시위(9.24) / 청소년보호위, 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71명 신상공개(9.24) /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50여명, 장기파업 중인 6개 병원의 문제해결 촉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9.25) / 지문날인 반대연대, 대선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참정권 요구하는 전국민서명운동 돌입(9.28) / '암심적 병역거부 지지' 밝힌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일부 남성 네티즌들에 의해 사이버테러 당해 일시 정지(9.28) /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회원 300여명,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역 앞 격렬한 시위 벌여(9.29)

● 주요 판결 : 서울형사지법,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김강필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9.25)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9.27)

##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587대 중 536대 검사 안 받아(서울시) ...장애인 안전 위협/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설치 434대의 휠체어 리프트에서 2천56건의 고장...고장 횟수 1대당 월평균 0.4건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80년도 '불량배소탕'이라 명목으로 시행했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삼청계획 5호 "불량배를 소탕하라"

의문사위에 따르면, 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아래 국보위)가 '불량배 소탕' 명목으로 입안한 삼청계획 5호에 따라 군과 경찰은 8월 1일부터 합동작전을 벌여 (이듬해 1월까지) 총 6만7백55명을 검거했다. 같은 달 4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령 제13호'가 사후발동돼 '일제소탕검거'를 정당화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라며, 심지어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한 사람이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람까지 검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거된 사람 중 3만9천7백42명이 25개 군 부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 중 7천5백78명은 80년 12월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이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의문사위는 "당시 삼청교육생들은 재판도 없이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심사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전국검사장 회의 기록'에 따르면, 80년 8월 19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삼청

비취볼 때 그 숫자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문사위의 현정덕 조사관은 "관련부처 등의 자료협조 거부 등으로 삼청교육 실행 과정에서 각 부처들이 담당한 역할 등에 대한 조사도 미진하다"고 밝혔다.

## 책임규명·피해배상 권고

이에 의문사위는 △삼청계획 5호 입안·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책임규명 △삼청교육대 시행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 조사에는 삼청교육대상자 선정, 검거과정, 심사, 군부대 교육내용, 삼청교육 실태, 보호감호 처분 경위 및 근거, 출소 후 삼청교육대상자 관리실태와 피해상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의문사위는 "경찰청은 최소 19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했고" "과거 내무부도 이들을 사후관리했음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감호처분 항의, 전정배씨 총살

이날 의문사위는 삼청교육 중 사망한 전정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전 씨의 경우 81년 6월 20일 육군 5사단 내 삼청교육대 감호분소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에 항의시위를 벌이다 경계병이 쏜 총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삼청계획 5호와 계엄포고령 13호는 (신군부의) 폭동행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전 씨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근로봉사를 한 것, 감호생 집단시위 중 발포로 사망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삼청교육 과정의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 숫자, 희생자 인적 사항 등은 시한이 모자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82년 3월 발간된 육군본부 계엄사 기록은 사망자 50명, 부상자 18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 &lt;인권하루소식&gt;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번호 7618848
- 국민은행 015-21-0723-021 (서준식)
- 우리은행 431-07-056582 (서준식)
- 농 협 011-01-404581 (서준식)
- 우 체 국 010025-0189806 (서준식)

#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흐름과 쟁점

### 1. 장애인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자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실신했다. (9.6)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9.10) 중증장애인 10여 명은 자하철 1호선 시청역 선로를 1시간 정도 점거하며,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9.11) 결국 서울시로부터 △‘발산역 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과 △9월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9.18) 하지만 장애인들은 39일 동안 계속된 단식농성을 풀며, 발산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법적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9.19) 한편, 이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 (9.29)

### 2.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의문사위는 71년 열차에서 추락사한 김창수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9.9) 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하원근 사건의 경우는 타살 후 자살로 조작·은폐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9.10) 또 74년 8명이 사생을 당해야 했던 소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밝혔다. (9.12) 비전향 장기수로 80년 강제급식 과정에서 옥사한 변형만·김용성 씨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9.17) 하지만 위원회의 미약한 권한은 의문의 죽음의 실제를 전부 밝히는데 역부족이었다. 23개월 동안 진행된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만료됐으나,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은 모두 30건이었다. (9.16) 이에 유족과 사회단체들은 의문사 조사중단에 항의하고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9.16)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3. 지문날인·주민번호 제도에 “위헌” 딱지를...

연세대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 는 것. (9.9) 실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난 7월 경찰이 지문날인 관련 통계자료를 교묘히 왜곡한 추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의견서에는 지문날인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율이 89%에 이르며, 66%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되어있다. 이는 물론 사실과 다르다. (9.24) 한편,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선에서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전에 돌입했다. (9.28)

### 4.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아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 (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당시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단됐다. (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그 내용은 재계의 입장에 선 것이었다. (9.5) 1백12일 동안이나 계속된 병원파업은 경찰병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했다. (9.11) 한편, 수해로 끊어진 철교를 복구하기 위해 주락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휴일도 없이 작업을 시킨다.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9.25)

## 논평

- 정부는 아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9.7)
-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9.14)
-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9.19)
-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9.28)

## 호외

-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 승리 (9.19)

## 인권이야기

- 함께 갑시다 (9.10/진영종)
-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9.17/변혜진)
-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9.24/정귀순)

## 인권정보자료

-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으르차차 힘찬 인권이야기」 (9.4)
-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9.25)

##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9.5)
-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 일 라 (9.6)
- ③ 전향공적이 물고 온 죽음을 -교도소별 (9.12)
-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9.13)

## 기획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 (9)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9.11)

## 기획 - 쟁점! 주5일 근무제

-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휴일수 (9.11)
- ② 총노동시간, 노동자들 등골 훔다 (9.14)
-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9.18)
-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9.19)
- ⑤ 유급생리휴기가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 (9.24)
-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9.25)
-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9.26)
- ⑧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9.28)

## 기획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9.18)
-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 인권교육국 (9.25)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9.26)
- 전원위 비공개안건/정책및대외협력소위 공개안건
- (몰입표) 인권영화·인권문화 만든다는데...
- 국가인권위 주요 권리 및 구제사항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10월 3일(목)

제 21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아주영

폐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정부가 입법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국회 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1일부터 닷새간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27일에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주영)

(개천절 휴일로 10/4일자 쉽니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유엔문서번호 : E/CN.4/Sub.2/1997/20

문서 제목 :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제출자 :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 루이 주아네

출처 : www.unhchr.ch

23개월 동안 진행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지난 9월 16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과 올바른 과거청산의 과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루이 주아네 위원은 1997년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침해자 불처벌에 문제’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알 권리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의문사법은 처음부터 기준미달이었다.

\* 불처벌이란 “체포, 기소, 심리 등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민주법학 11호』에서 볼 수 있다.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과 신뢰성 문제가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의 쌍방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의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권위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단체 배제 문제 △빠른 속도로 관료화되는 모습 △진정사건 처리의 문제 △예산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자 인권위원회는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오 국장이 '중상모략'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공방이 진행됐다.

오 국장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지난해 인권위 설립과정부터 올 4월 30일 인권단체 토론회를 거치며 줄곧 지적되어 왔던 문제 외에도 △그 후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드러난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할 말을 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쟁점1〉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왜 인권단체들은 배제됐는가?**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 인권법제정투쟁을 전개해온 '민간단체 공대위' 내에는 두 개의 다른 흐름이 형성됐다.

"불완전한 법안인 만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원칙론)과 "부족하나마 수용하고 법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현실론)이었다. 이러한 입장차이가 공개적 분열양상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공대위는 해산되었다.

그런데 8월 1일 김창국 변호사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원칙론적 입장에 서 있던 인사들이 오히려 '인

권위 설립준비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른바 '참여와 배제'의 구도가 형성됐다. "논리대로라면 현실론적 입장에 있던 인사들이 인권위 설립 작업을 주도하고 그 반대는 상당히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상황은 거꾸로였다"(오창의 국장)

당시 30여 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회의'가 올바른 인권위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으나, '참여파'들은 연대회의 그룹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지키면서까지 그들을 배제한 가운데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참여와 배제라는 잘못된 구도가 현재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오 국장의 평가다. 오 국장은 "법 제정 이후 인권위원회가 세월을 허송한 데에는 위원장 내정까지 3개월을 그냥 보낸 대통령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도 어려웠을 작업을 '배제'하면서 까지 고집스럽게 움켜쥐었던 참여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측은 설립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지난 5월, 20개 인권단체들이 이 부분을 공개질의한 데 대해, 인권위는 "설립준비기획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일축했으며, 오창의 국장은 '공격'에 대해서도 반론을 폐지 않고 있다.

인권위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참여파'의 '원죄(原罪)'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인권위에 대한 불신과 반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쟁점2〉 직원체용 공정했는가?**

오창의 국장은 "직원 선발이 비록 공채라는 형식을 거치기는 했지만, 참여파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내정되었다"며 "이러한 잘못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개인적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떤 인사가 누구와의 인연 때문에 채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민간 출신 직원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공체가 아닌 '알음알음' 방식으로 채용됐고, 채용될 사람이 미리 내정된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직원체용의 공정성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인권단체들의 공개질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기획단 참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내정설 등이 제기되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에 있어 선발기준과 방식, 심사주체가 누구였는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서류심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들을 엄정히 심사했다"고 답변했다.

**〈쟁점3〉 진정사건, 제대로 접수되고 처리되는가?**

진정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논점이 제기됐다. 우선 '진정건수'와 관련된 주장. 오 국장은 "월평균 259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진정이라 할 수 있는 면전진정은 월 평균 54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하원근 사건 이후 며칠 사이 40건 이상의 군의문사 사건을 접수했다는 한 인권단체의 경우와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오 국장은 "하루 평균 찾아오는 사람 이 두세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권위는 크게 잘못 나가고 있다"며 "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지에 대해 인권위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측은 "월평균 진정 건수가 270여건, 그 가운데 방문진정 80여건, 면전진정 60여건으로 오 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면전진정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의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 3면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논쟁] ↪ 2면에서 이어짐**

진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진정이 제대로 처리되는가"의 문제. 오 국장은 "인권위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구제활동"이라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한 구치소 사망사건의 경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없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인권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쟁점 4〉 빠른 속도의 관료화**

인권위의 관료화 징후는 활동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였다. 이와 관련, 오창의 국장은 최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단식농성을 예로 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인권위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장애인들에게 '공권력 투입' 요청장을 계속 흘리면서 직원 휴게실로 옮길 것을 종용했고, 농성과정에서 단진조치, 출입통제 등을 통한 압박을 지속했다."

장애인들의 점거농성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위원회(8월 22일)에는 '장애인동권연대 단식농성'에 대한 보고가 올라 왔다. 인권위 각층 출입구에 전자출입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장기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신속하게 보고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출입차단장치는 현실화됐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실명화조치도 '관료화'의 대표적 사례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 조차 "인권위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려 한다"며 인권위원회의 권위주의적 대응과 관료화를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쟁점 5〉 고문변호사 제도와 예산 낭비**

이번 논쟁에서 인권위측이 '마타도어, 중상모략'이라며 가장 발끈한 대목이다.

인권위원회는 출범 직후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두 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위원장과 사무총장만 받게 되어 있고, 전화자문이든 면담이든, 매번 당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 왔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2개월 동안 한 사람에게 1천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예산 낭비이며, 그 인물이 '배제'와 '설립'을 주도했던 인사였다는 점에서 매우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인권위는 "변호사 개인이 아닌 로펌에 3개월 11일간 1천3백여 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며 "건당 약 27만 원에 달하는 자문료는 다른 전문가에 대한 지급수준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상의 논쟁과 관련해, 인권위원회는 "오창의 국장의 발제문에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담

겨 있다"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창의 국장은 인권위에 대한 재반론 글에서 "의문사진상 규명위가 집행부 교체의 아픔을 딛고 거듭나, 여러 활약을 보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이대로 지지부진해도 좋은, 그렇고 그런 조직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창조]

**【물음】****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자유게시판은 그동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종종 게시되었고, 최근엔 이런 내용들이 점점 증가하여 자유게시판 운영의 의미가 퇴색되곤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유게시판 운영 취지를 유지하되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변(辯)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인권위는 이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글, 욕설, 상업적 광고나 음란물, 인권침해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글"을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실명화'까지 실시해 버렸다. '휴지통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력낭비'로 봤기 때문일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이 실명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명백하게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실명화에 수반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다. 장 실장은 "주민번호는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이며, 몇몇 기관에서는 주민번호를 추적해 네티즌을 위협한 사례도 폭로되고 있는데, 인권위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엔 게시판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현상도 뒤따르고 있다.

행정부의 실명화 추세와 달리, 청와대와 국회 등은 '진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때 자유게시판을 없앴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게시판을 다시 열었다. "네티즌들은 편안하게 글을 쓰고자 게시판을 이용한다. 그런 게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게시판을 운영하는가?" "실명 게시판은 국가인권위와 어울리지 않는다. 실명게시판은 '국가인권위'에서 '국가'를 강조한 처사가 아닐지…". 여론의 일부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장애아동에겐 유치원 문턱부터 높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지체 아인 딸 박모양이 비장애인과 통합 교육을 받게 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성

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 4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2면에서 계속)

###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진입해 성조기를 불태우려 한 대학생의 사진이 우리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2일 미국대사관 구내 혹은 주변에 있던 10여명의 대학생들은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재판관할권 이양' '소파 개정' 등을 요구하다 경찰에게 얄어맞고 짓밟히며 끌려갔다. 올해만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덫씌워진 명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리고,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땅 민중들의 울분을 표출하고자 했다. 지난 6월 30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심미선·신효순 씨 사건에 대해 미국은 오만한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미군은 공무집행상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이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9월 14일 서경원 씨가 주한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9월 16일 미군트레일러에 의해 박승주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반성 할 줄 모르고 시정할 줄 모르는 '점령군'의 자세를 보여줬을 뿐이다.

대학생들은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여중생들의 비명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는 미군의 폭력 앞에서, 점령자로 군림할 뿐인 아메리카의 후안무치 앞에서 실정법의 경계를 넘기로 선택했다.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는 50여년 동안 이어진 불평등 관계 속에서 미국에 짓눌려온 우리 민중들의 자결권의 발현이다.

미국의 존재는 이미 세계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을 초토화시키고 중동에 전문을 감돌게 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지배에 반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이다. 대학생들의 대사관 진입 시위는 저항권의 행사이며 이것이 설사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2002년 10월 5일(토)

제 21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사회과는 기존의 교과목 중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직접 인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바로 전국사회교사모임의 회원들로 이들은 지난해 말 "아름다운 세상, 신나는 인권교육" 이란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다.

사회교사모임 대표 박현희 선생님은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고민 속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화두와 만났다"며 "아직은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박 선생님은 "다른 교과와 달리 사회과목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회과목이 바로 인권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포괄적인 인권개념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 인권, 평화, 양성평등 같은 심화과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해 이들이 펴낸 인권교육 프로그램집은 인권교육 연구회원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제로 아이들과 진행한 경험들을 담고 있다. 특별활동이 아니고서는 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수업시간 틈틈이 인권의 역사를 들려주거나 체벌이나 사형 같은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아이들의 참여나 만족도가 큰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교실에서 인권의 가치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공유한다고 해서 인권교육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인권을 해석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확득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

###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국지부장과 조합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조합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하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원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당사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하되,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권과 체결권을 분리하고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의견서를 행자부 장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 반발하여 리본달기, 1인시위, 입법안 반대 서명 등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17일 총궐기대회와 28~30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지부를 순회하던 중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연행되어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다. (박종모)

양교등학교 NGO탐구반의 활동은 사회교사모임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와 관련해 의결권을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참관권이라도 줘야한다고 학교에 정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문지도는 일상화된 체벌이나 폭언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인권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박대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사처럼 교육하기 어려운 집단도 없다.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라며 "아동권협약도 순위교사에 반영해야지 떨떨떨 외우면서 공부할 것"이란 뼈있는 농담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사회과연수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체벌금지, 학내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회교사모임은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한국교육이나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체은 상당히 반민주적"이라며 "교체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발표는 작은 시작이지만 교육계의 풍토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보영)

(→1면에서 이어짐) 지적했다. 정부가 장애아동이 교육권에서 차별을 당하도록 방지했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은종근 간사도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아동을 주로 국공립(병설) 유치원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워낙 적어 장애아동들이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다니기 어렵다"라며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원에 따르면, 2001년 특수교육요구 아동의 출현율은 2.71%로 6세~11세 사이 해당 아동의 수는 11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해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유치원 1천8백9명, 초등학교 3만2천6백9명이고 이 중 일부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 가능성 우려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도를 비난하는 반전시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아래 민중연대)은 7일 아침 10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부시행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봉쇄·억지라는 기준의 안보전략을 폐기하고 …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이라크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현장에는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적 반격 말고는 그 어떠한 무력행사도 금지하고 있고 분쟁은 유엔 안보리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국제 사회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민중연대는 또 「부시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라크를 침략해 얻으려는 것은 바로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단언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지지 획득, 미국내 석유자본과 군사자본의 경제적 어려움 타개, 군사적 폐권 강화가 이번 침략전쟁의 목적이라는 것.

현재 이라크는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했으며,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궁까지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앞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을 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 협정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다. 걸프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실전태세를 갖추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한

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임기 동안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와 군산복합체 그리고 석유재벌 사이의 커넥션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평했다. 또 "이라크와의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제 전쟁이 발발해 끝난 다음엔 (미국의 전쟁 상대로) 남

는 건 북한"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아프간 침공 1년을 맞아, 8일 아시아 17개국에선 반전평화 공동행동이 전개된다. 한국도 4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이 이날 아침 11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어 인사동 인사마당까지 행진한 후 「반전평화 문화제」를 연다. 또 26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10만 명의 반전시위가 열리는 등 세계 각 국에서 반전 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범용)

###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과에서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 작업에 관계했던 한 검사에 따르면,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범죄 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하되 과거 범죄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외통부 박 심의관은 「미국이 (불처벌 협정) 조안을 보내왔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나라와 엔지오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각 국에 군사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자국 내 미군에 대해 면책권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루마니아, 이스라엘, 동티모르 등이 이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지난 9월 30일 미국의 불처벌 협정 체결 강요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문을 체택했다. 국내에서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정부에 불처벌 협정 체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철호 씨는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 홈페이지는 [www.amnesty.or.kr/campaign/021004.htm](http://www.amnesty.or.kr/campaign/021004.htm)이다. (이주영)

2002년 10월 8일(화)

제 21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2189 호)

2002년 10월 8일 [2]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2189 호)

2002년 10월 8일 [2]

##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 감추어진 세계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메이저급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지만 언론을 통해 쓴아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뉴스들은 그 자체로 돈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기종목은 모두 38개. 그러나 한국메달의 유망종목이거나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여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경기가 아닌 종목의 경우에는 생중계는 아예 하지도 않으며, 하이라이트 시간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모두 44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하나의 아시아」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회원국 전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44개국이라는 나라들 가운데 소위 「돈 안 되는 나라들」은 개막식 이후 언론매체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아시안게임 덕분에 언론매체에서 감추어지는 모습들은 또 있다. 역시나 배고픈 사람들이다. 생존권을 걸고 장기파업을 하다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혔던 병원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앞날이 창창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청춘의 정점을 어떻게 사장당하고 있는지, 철거촌에 들어닥쳤던 깅페들이 아직도 쇠파이프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지하철역마다 썩어 들어가는 몸뚱이를 신문지 한 장으로 보전하며 누워 있는 노숙자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언론은 종내 입을 다물고 있다.

한반도를 시뻘겋게 물들었던 월드컵의 흥분 뒤에 감춰진 아픔들이 불과 몇 달 상간을 두고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순위를 두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대항전이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곧 통일의 물꼬를 트는 위대한 역정으로 승화되면서 시청자를 매료시키는 그 순간, 미국은 이라크를 폭격하기 위해 잔혹한 대량살상무기를 준비한다. 각 국의 국가가 물려 퍼지면서 그 나라의 깃발이 올라가고 휘황찬란한 금빛 메달이 선수의 목에 걸리는 그 순간 경찰의 방패에 쪼혀 넘어지는 노동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개막식 선수단 입장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선수단이 아라파트의 대형 사진을 들고 입장했다. 단지 스포츠 행사일 뿐인 아시안게임에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옳은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 어떤 나라에 11대 0이라는 스코어로 참패를 당한 아프가니스탄 축구팀을 보면서 단지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만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참패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

어떤 미개한 나라의 군수재벌이 돈벼락을 맞고 있을 때, 이 친연한 중동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던 나라는 날벼락을 맞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더 많은 돈벼락을 맞고자 하는 어떤 미개한 나라의 군수재벌과 석유재벌이 수백만이 될지도 모를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돈 되는」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신문과 TV에서는 현실과 세상이 감추어지고 있다. 세상이 뒤바뀐다고 해도 스포츠라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아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1. 삼청교육, 22년의 한을 겪어내자

법학자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주최 공청회(9.30)/ 의문사위,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특별법제정 권고키로 결정(10.1)

### 2. 성조기에 대한 분노

한총련 대학생,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부시 미 대통령 공개사과와 형사재판권 이양 요구하며 미대사관 진입 시위(10.1) / 미대사관 진입 시위 대학생…4명 구속영장 신청, 4명 불구속 입건(10.3)

### 3. 막가파의 끝은 과연 어디?

이라크-유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에 관한 세부계획 합의…미·영, 이라크 내 대통령 전용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한데 반발(10.1) / 미, 특정 아랍권 나라에서 입국한 방문객들에게 지문날인과 사진촬영 조치시행(10.1) / 미, 「이라크 사찰단 무장병력 동원」 새 유엔 결의안 초안 마련, 영국 제외 대부분 주요국 반대(10.2)

### 4. 여성은 군에 대해 입 닥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대학생, 국군의 날 맞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10.1) / 이대 총학생회,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족쇄, 주령주령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 촉구 농성돌입…병원노동자 단식농성 계속(10.2) / 공무원노조 차봉전위원장, 체포·수감(10.3) /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 촉구 총력투쟁 선포(10.4)

###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4만4천9백33건, 국세청 9천 23건, 국정원 24건, 서울경찰청 6건, 서울지검 1건 등 공단사업과 관련없는 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보건복지부) /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2백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어(대검찰청)

예 멀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봉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판을 제기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굳이 3S라는 고전적 우민화 정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의 아시아」라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 속에 감추어진 불손한 우민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1년 전, 테러리스트와는 아무 관련 없이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에 무력함을 느껴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전쟁의 상흔과 가혹한 경제제재로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를 또다시 비참한 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8일 여성·평화·학생·민중단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라크 공격 반대”를 외쳤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청년학생반전위원회 등 47개 단체는 이날 아침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석유 페권과 군수산업의 이익을 채워 주기 위한 더러운 전쟁”이라며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왜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더러운 전쟁에 동원돼야 하냐”며 미국이 요청하면 이라크 공격을 원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 일본, 푸에르토리코, 미국 등지에서도 함께 개최되는 ‘반전평화 국제행동’의 일환으로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경란 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두 개의 서로 다른 국제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 기도를 반대하는 국제행동을 미국의 아프간 공격일에 즈음해 열자는 의견이 우연히도 똑같이 나왔다”라며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평화·여성단체들이 뜻이 모아져 국내에서도 오늘의 행사를 준

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여성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인사동 남 인사마당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회원은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지금,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를 위한 집단강간의 기억이 제 사라지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탈레반의 물려간 아프간 땅에서 파수꾼 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과 강간을 지켜봐야

#### 클릭! 인권정보자료

####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 156쪽 /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의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 연맹의 실태조사 자료와 더불어 50여 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 기초하여 간접고용의 유형과 확산경로 및 실태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파견근로는 한마디로 ‘21세기형 노예노동’으로 노동의 권리 박탈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3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과제로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대응사례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3권 보장과 차별철폐 운동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I. 간접고용의 유형 및 확산 경로 / II. 간접고용의 실태 : 파견법 4년의 결과 / III. 불법적 간접고용 양산하는 법·제도의 문제-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노동부 결정을 중심으로 / IV.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과제

2002년 10월 9일(수)

제 21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2190 호)

2002년 10월 9일 [2]

####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들 이주 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보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주방은 법을 어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만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정부에게 무능함이 있음을 꼬빌은 꾀집었다.

“우리는 무섭다. 단속해서 추방시킨다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때로는 물기도 한다. 무서운 것은 형사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는 결국 무서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싸움이 될 것이다.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를 합법화하고 노동비자(허가)를 줘야한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조합원인 꼬빌 씨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공동체에서 활동 중인 비두 씨는 지난달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연행된 지 3일만인, 9월 5일 방글라데시행 비행기를 탈 뻔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이 본인을 직접 서명하지 않은 여행자증명서를 위조했음이 드러나 가까스로 강제 출국은 모면했다. 이에 대해 꼬빌과 비두 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억압받고 때때로 무서움에 떨지만, 이처럼 계속 한국정부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결국엔 우리가 정부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밝혔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에 따르면, 지난 달 2일부터 11일까지 벌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 중에 9백2십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됐다. 이는 지난 4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이후 처음 진행된 집중단속이었다. 정부는 당시 자진신고를 한 이주노동자에게 1년의 출국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3월까지는 전원출국 시켜 26만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 보내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개월 안에 26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출국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침을 내 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고근예)

#### 〈기자의 눈〉

####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못해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초등3년 전체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적인 평가도구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집평가는 읽기, 쓰기, 셈하기 영역에서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평가는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판정하되, 불합격자에 대해선 부진의 정도를 기술한 결과를 덧붙인다. 하지만 교육청별·학교별·개인별 서열은 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교조 등 사회단체들은 전집평가가 점수경쟁, 학교간 서열화, 사교육 증대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서열을 산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 불합격된 학생들의 통계가 학교간에 비교되면서 이들의 수를 줄이려는 경쟁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집평가가 부진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개인의 학습능력, 가정환경, 교사의 열의, 교육시설의 구비정도 등 다양하다. 평가 당일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한 차례의 획일적인 평가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다. 따라서 전집평가는 이미 부진 학생 판별기준으로서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진의 이유에 대해 아무런 분석도 하지 못함으로써, 점수가 낮은 학생들 모두를 부진학생으로 낙인찍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며 국가의 책무다. 따라서 국가가 부진학생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때 부진학생을 판별하는 것은 과제물, 관찰·상담, 시험 등 다양한 평가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일선학교 담당교사의 몫이다.

2001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는 법정정원과 비교해도 8천4백여 명이 부족하다. 게다가 급식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교육 외적인 업무부담 또한 교사들에겐 심각하다. IMF 이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줄어들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진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란 더욱더 어렵다. 부진 학생의 학습권은 아이들 성장속도의 차이를 고려해 그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을 강화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교육환경에 대해선 일언반구하지 않으면서, 부진학생 기초학력 증진을 명분으로 전집평가만을 고집하는 교육부의 모습이 아쉬울 뿐이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80년대 군 의문사 관련 군 현병대의 수사가 진술 및 증거 조작, 미비한 현장조사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접수된 25건의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현병 관계자와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의문사위는 9일 낮 1시 기자브리핑을 열어 80년대 군 의문사 사건에서 드러난 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문사위는 가혹행위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사망의 이유를 개인적 비관 자살로 단정지었던 점을 우선적인 문제로 꼽았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84년 11월 육군 제5군단에서 사망한 임용준 사건의 경우, 고참병들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여려 부대원들이 진술하고 있으나, 군 현병대는 불우한 가정환경 비관으로 자살한 것으로 종결했다. 또 이이동(육군 제9단약장, 87년 9월 사망) 역

시 평소 고참병들에게 구타를 수차례 당했고 사망 1~2일 전에도 고참병에게 심하게 맞은 사실이 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군 현병대는 이이동 사건과 관련 구타는 전혀 없었고 가정문제 비관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지는 바 있다.

또한 군 현병대의 묵인 하에 사건 경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 이승삼 사건(육군 제36사단, 87년 3월)의 경우, 1차 수사를 담당했던 36사단 현병대 수사관은 이 씨가 고참병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당시 현병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은폐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창돈(육군 제17사단, 83년 5월)은 혼자 근무교대 아무도 없던 행정반에서 총기 사망한 것으로 의문사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당시 현병대는 이창돈이 정상적으로 근무교대하고 행정반에서 주변 사관에게 신고한 후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

의문사위는 군 수사기관이 현장에 남겨진 물품 등을 경시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우혁 사건(육군 제20사단, 87년 9월) 수사과정에서, 현병대 수사관들은 현장에 있던 기름통, 라이터 등에 대해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 증거로서의 가치를 잃게 했다. 또 박상구 사건(육군 제7단약장, 87년 5월)의 경우, 사건 현장에 박상구가 구토한 흔적이 있었음에도 현병대는 구토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청소해 버렸다.

의문사위의 김준곤 상임위원은 “최근 발생한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군대 내 의문사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단장 아래 소속된 군 검찰과 현병대가 같은 사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군 수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주영]

2002년 10월 10일(목)  
제 21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법제개선 권고’ 활동에 대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현재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올해 2월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달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권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제1항을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되어 무수히 많은 법령·제도 중 △위원장의 검토지시가 있거나 △정부 입법예고안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안은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발의된 것도 있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때 단체보다는 개인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건당 전문가 3~5명에게 자문을 요청한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은 위원회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위원회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NGO들로부터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며, “인권단체들의 의견은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부연했다.

법제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은 정책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집

행되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법제개선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정책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지거나 보도자료로 배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제개선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제개선담당관실에서 법제개선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김 과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충분치 않은 인력과 ‘권고’라는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분명 법제개선 권고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위원회 스스로 인권의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안을 심의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검토요청이 들어온 법안에 대해선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김홍신 의원이 ‘성전환자 호적 정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위원회는 의원발의 입법이란 이유로 의견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NGO들과의 거리두기를 이유로 인권단체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이해 당사자와 거리를 두는 것을 오독한 것”이라며, “올바른 정책생산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금까지 공익적 관점에서 일해 왔던 인권단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문제 등 사회권에 대해 인식의 깊이가 얕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재 주5일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제 적용시기를 2007년 7월 이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6%. 따라서 정부입법안은 향후 5년 동안 과반수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놓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를 인권의 문

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인권보장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잡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혹은 차별로 볼 수 있다”라며, “위원회가 의지만 있으면 (의견 표명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며, “잘못하면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라는 위상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타 국가기관과 교섭을 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자유권 영역이나 고용, 재화이용, 교육 등의 문제로 국한된다. 반면 법제개선 권고의 대상은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에 다루는 인권문제를 망라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인권과 관련된다. 따라서 위원회가 의지만 있다면 인권의 잣대로 이야기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때 위원회는 ‘논리’를 이야기한다.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했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그러한 논리를 구성할 자신이 없다면, 중요한 인권문제라도 위원회의 입장 표명은 유보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위원회는 법제개선 권고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려는 치열함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절실한 것은 논리에 주눅들지 않는 용기다. [법용]

##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 개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권오현 등, 아래 계승연대)는 9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연대는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활동이 종료됐다. 부족한 조사권한 때문에 조사대상 사건 82건 중 30건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됐고, 33건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기각됐다. 또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위원회’와 관련해선 △민주화운동 개념의 협소함 △대상자의 누락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 미비 △보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를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까지 넓혔다. 또 특별사면, 복권과 전과기록 말소 등 가시적인 명예회복 조치와 명확한 보상규정을 빠대로 하고 있다. 한편, 계승연대는 10일 유가족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16일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2차 촉구 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박종모]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로 부려

한 사업장에서 공고 실습생들을 노동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는 구사대로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이찬교)는 "(주) 세원테크(사장 장현수, 충남 아산시 배방면)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가로막는 일에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3학년 실습생들을 동원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10일 밝혔다. 구사대에 공고 실습생들이 동원된 것은 지난 7월과 8월의 일이다. 구사대에 동원된 실습생은 포함 60명, 구미 10명, 대구 20명 재학생들로서, 노조가 찍은 비디오를 통해 뒤늦게 각 학교에 알려졌다.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맞서 10일 현재 141일째 파업 중이다. 회사 측은 지난 7월 14일 경찰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낸 이후, 공장 정문과 주위를 봉쇄하고 구사대를 세워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아왔다. 해당 학교의 한 선생님에 따르면, 현장 반장이 '조합원들이 들어올 때 정문 앞에 설 수 있나'라며 실습생에게 사실상 구사대를 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 3월 내지 4월부터 세원테크에 실습을 나온 상태다.

전교조 경북지부 이용우 선생님은 "회사가 실습생들을 파업 때 값싼 대체근로로 이용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노사 분규 현장에서 정문을 지키는 구사대로 동원한 것은 처음 접하는 일"이라며 "윤리적·인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학교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실습생들에게 실습과 무관한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것이 조치의 전부다.

경상북도 교육청 성병길 과학산업교육과장은 실습생들이 구사대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겠다고 한다. 애들이 의사가 첫째"라며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선생님에 따르면, 회사측이 일부 학생들에게 '실습이 끝나면 병역특례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군대가 면제된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용우 선생님은 "학생들의 심정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사' 운운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큰

2002년 10월 11일(금)

제 21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원테크에서 실습생들은 말만 '실습생'이지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현장에 투입돼 왔던 것 역시 드러났다. 해당 공고 실습생 중 한 명은 주44시간 노동에, 한달 중 보름 가량은 하루 최대 세 시간씩 임금을 더 했다고 한다. 임금은 선택이지만,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임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실습생의 경우, 기본급 56만원에 임금수당까지 합치면 약 90만원 정도를 받았다.

지난해 실습생이었던 유모 씨는 "작년엔 아파서 일요일 특근이나 임금을 못한다고 해도 조장들이 강제임금을 시키기도 했는데, 노조가 생긴 후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2면에서 계속)

### 만화 사랑방

이동수



##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쳤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9일 오후에는 (제네바 현재 시각) 한국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열렸다.

지난 2000년 5월,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민간단체와 유엔전문기구로부터 추가정보를 구하고 주요 문제점을 추리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다.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민간단체가 이 회의에 초청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회의의 논의에 기초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점을 추리고, 그것을 한국정부에 보낸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정부 보고서 심사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민간단체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혜원(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훈(파스로마나 사무국장)씨는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아동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이미 7년 전에 대부분 언급됐던 것들이며,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의 아동들을 이번에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똑같은 반복을 하지 말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번에는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민간보고서가 분명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정부가 유보조항의 철회와 같

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유보한 조항은 △9조 3항 부모의 일방 혹은 쌍방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면접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1조 가항 입양은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40조 2항 나호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아동의 권리 중 상소권.

아동체벌, 임시교류의 폐해, 차별적인 호주제, 정부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를 침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서술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30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될 권리가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

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EIS(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逆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표시했다. 위원들은 호주제에 대하여 성차별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날의 토론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에 제기하는 질문을 다음주에 발표하며, 한국정부의 2차보고서에 대한 심사는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7년 전과 똑같은 요식 행위로 이번 심사를 받을지, 아동권리의 신장을 위한 계기로 삼을지가 주목된다. [제네바-류은숙]

(→1면에서 이어짐) 규정한다.

한 공고의 최모 선생님은 "회사는 공고 실습생들을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만 생각해, 일은 똑같이 다 시키면서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고 임금만 적게 준다"라고 말한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 제도가 교육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10일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 아침 11시께 허영준(고 허원근 아버지) 씨, 신정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 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시에 천막, 현수막 등 집회물품까지 압수하며 농성을 저지했다. 오후 3시께 풀려난 유가족들은 천막 없이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나, 밤 9시 30분경 경찰이 다시 연행하기도 했다. 11일 새벽 12시 30분 현재, 경찰은 천막조차 끌어내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농성을 강행하면 또 연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정윤희 진상규명사업국장은 "국회에서 진작에 법을 개정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며 계속 버틸 작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10일 아침 10시에 열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앞 선포식'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조사권한 강화 없이 단순히 기간 만 연장하는 법개정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말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의문사진상규명위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거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경찰이 집회신고제의 취지와 달리, 사건건 신고 내용을 트집잡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질식케 한다는 비판이 대전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민특위' 안은찬 대전충남본부장, 박희인 사무국장, 대전충남연합의 김병수 사무처장 등은 경찰서로부터 최근 거듭 출석요구를 받았다. 지난 9월 7일 대전역부터 도청까지 진행했던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심미선 신효순 살인사건' 규탄 집회 때 신고 내용에 없는 성조기, 꽃상여 등을 사용했고 신고 내용과 달리 두 개 차선을 사용해 행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충청지역 노점상연합회(아래 충청노련)는 지난 달 12일 대전동부경찰서(아래 경찰서)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같은 달 9일 충청노련 소속 노점상들이 대전역 광장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서명과 모금운동을 하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서는 경고장에서 "(충청노련이) 위법인 사실을 알면서 14:00경 차양막 1동을 설치했"며 "차후 위법사례 발생 시에는 본 건과 병합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충청노련이 14일부터 동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내자, 경찰서측은 그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14일 집회 시작 직전 스구호제창 금지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집회 제한을 통보했다. 집회 주최측이 '소리를 줄여서 하겠다'고 해도 경찰측은 무조건 안된다며 '이를 어기면 내일부터는 집회 금지'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전양심수 후원회'의 임나리 씨는 "경찰은 어떻게 하면 법률을 악용해 집회를 규제할까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해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와 다른 방법의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위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며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내린 바 있다.

임 씨는 "집회 물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 범위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충분히 가능한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라고 문제를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9월 7일 집회 때 차선 사용 문제에

2002년 10월 15일(화)

제 21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①

###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인권의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대혁명이나 영국의 권리장전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당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소수의 부르주아지였을 뿐 '나머지 시민들'의 시민권은 이후의 많은 투쟁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역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은 무수히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 건강권'이다.

대우조선에서 작년 말에 실시한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248명이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됐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알려진 근골격계 질환이라 팔다리 허리, 목, 어깨가 아프고 걸리는 등의 관절, 뼈, 인대의 질병을 통칭해 사용하는 용어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자세에 따라 우리 몸 다양한 부위에 올 수 있으며, 이미 알려진 질병명도 50여 가지가 넘는다. 근골격계 질환은 직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작업장 안전기준 후퇴 등에 의해 최근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진행되는 일련의 싸움들은 어느 사이 어떤 '공장' 안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하는 병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한 동네에서 248명의 시민이 동일한 질병을 호소하며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언론과 뉴스는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를 보도할 것이고 정부는 이들에게 만연한 '공통의 병'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얻게 되는 산재나 직업병은 개인의 부주의로 돌려지고 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투쟁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몇몇의 고립된 투쟁으로만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건강권을 비롯한 제반의 권리 싸움에 있어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다.

헌법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더불어 여전히 일터에서 얻어지는 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질병을 작업장에서 획득하는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부주의해 건강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그러나 시민인 노동자들의 불건강은 개별적인 노동자가 건강을 돌보지 못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의 환경이 유해하거나 지나친 노동강도로 인해 발생하는, 순전히 '노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에 8~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한달에 3백여명의 시민들이 일터에서 산재로 건강을 잃고 있다. 사회적 환경이 야기한 불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자들의 산재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자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적 문제로서의 건강문제의 해결은 그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1. 다시 국회 앞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나라당사 앞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조사권한 강화 없는 의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경찰 참가자 연행,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저지 시도(10.10)

### 2. 실습생을 구사대로 세우는 사회란?

공무원노조, 정부중앙청사 행사부 장관실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전 위원장 석방 요구하다 연행(10.7) / 민주노총, 중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1년 늦추고 임금보전을 시행 첫1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 정부안에 대해 총파업 선언(10.9) / 전교조 경북지부, (주)세원테크가 구사대에 공고실습생들 동원했다고 주장(10.10)

### 3.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하라!"

민중연대(준), 열린시민공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기자회견(10.7)→47개 여성·평화·민중단체,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열고 인사동까지 평화행진 후 문화제 벌여...미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공격계획 중단 촉구, 이라크 공격 원조 밝힌 한국정부 규탄(10.8) / 미 중앙정보국(CIA), 미 도발적 행위 없는 한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낮다고 밝혀(10.8) / 미상·하원,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 주는 결의안 통과(10.10)

### 4. "군수사 문제 많다"...과거만 그럴까?

의문사위, 80년대 군의문사 관련 군현병대 수사가 진술·증거조작, 미비한 현장조사 등 문제있다고 밝혀(10.9) / 의문사위,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문건 공개...조사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1천만원 과태료 부과결정(10.11)

5. 기타 : 동성애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권리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 한국전 전후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해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10.10)

● 주요 판결 및 통계 : 경기도 지역 장애학생 4만7천 834명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8천536명, 이 중 특수학교 취학 학생 7천6백94명으로 41.5%에 불과(10.8) / 서울 지법, 87년 수지김 사건 기소 윤태식씨에 살인혐의 징역 15년 선고...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등 '간첩조작 행위' 피의자들은 공소시효 만료 이유 기소조차 되지 않아(10.1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 항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5일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해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약당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료접근 및 수집, 관련자의 소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문사위의 부족한 권한과 촉박한 조사기간 때문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범 위원장 등 이날 보고회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0년 전 반민특위 활동이 반민주, 반민족 세력을 척단하지 못했던 것처럼 의문사위의 활동이 지금 중단된다면 그나마 얻어낸 민주화의 성과도 반격당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은 2000년 7월 공포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접수 받은 진정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인혁당 사건, 옥사사건, 행방불명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해 지난 9월 16일 까지 총 83건에 대해 조사했다.

###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 51개 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 ◎ 계속적인 진상규명 :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 공안기관의 문서에 대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과 공개에 관한 법령 마련
- ◎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 ◎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 ◎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 사인확인 : 독립적인 검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 ◎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처우 폐지, 사회보호감호제 폐지, 집필과 서신검열의 제한 법제화, 계구사용 구체화, 징벌관련 법령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 ◎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상설화, 군검찰과 현병 등 독립성보장,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교육 필수화
- ◎ 그 외 : 국가긴급권 관련 제반 법률의 인권침해 요소 정비, 국가보안법의 개폐,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범죄내용의 교과서 수록, 정부기관과 공공도서관에 위원회 보고서 비치 (정리:김보영)

2002년 10월 16일(수)

제 21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경찰이 지난해 6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해 피해를 줬다며 경찰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여 조직부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한미

보를 수집, 이를 도용했다고 지난 3일 MBC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찰은 지난 해 6월 한 씨를 비롯해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홍우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등 6명을 노동 관련 사안으로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사진과 이름 외에도, 주소, 본적에다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 벽보, 공공 벽보, 전봇대 등 공공장소에 게시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한 씨 뿐 아니라 당시 수배자였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수십개의 아이디가 이미 개설돼 있는 걸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에도 발전회사 노동자 24명을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 전국에 수만부 배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만 있으면 새 아이디 개설하고 신용정보도 개설할 수 있고, 또 개인정보를 보관했다 나중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민번호 개설했던 양모 씨는 경찰이 배포한 지명수배 전단에서 한 씨의 개인정보

최 정보통신부장은 "다른 지명수배자와 달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 유출하고 지난해에만 그친 게 아니라 올해 초 또 되풀이 된 것은 고의성이 같다"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지명 피의자들을 공개수배할 때 신장, 이름, 체형 정도가 나가지 주민번호는 나가지 않는다. 노동자 쪽은 왜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노동자 수배자에 대한 주민번호 공개가 이례적인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더구나 한 씨 등 지난 해 6월에 지명수배된 사람들은 지난해 8월 초 경찰에 자진출두해 수배사유가 해제됐는데도, 경찰은 11월까지 경찰서 벽보 등에, 올해 3월까지 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배전단을 계속 게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지명수배자라 할지라도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주영]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 522-7284/2002년 10월 /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관할권의 범위 △범죄혐의자의 기소, 체포, 인도 △재판관 선출 △피고인의 권리보장 △로마법정의 국내 수용을 위한 과정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19개 질문에 대한 쉬운 해설을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8조에 이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법정의 한글번역본을 신고있어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였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서명했으나 최근에서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인권보장의 흐름에 한 획을 그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참조. [최은아]

(→1면에서 이어짐)

그 사유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내부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불신이 쌓인다"며 실망을 드러냈다. 또한 "2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무원들도 조사에 전념하도록 과견이 아닌 전출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은 "혁명적 성격을 가진 의문사위가 한계를 갖는 것은 일부 가해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정부의 성격에 기인한다"며 "개혁적이고 민주적 정권 없이 참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 등이 위원회의 활동을 축소·왜곡 보도할 뿐 아니라 방해하기도 했던 점을 보고서에 꼭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전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청송 제2 보호 감호소 수용자 1백여 명이 근로 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호소의 정재복 보안과장은 “14일 최종적으로 단식하고 있는 20여 명을 모아놓고 소장님이 ‘가출소 허가 기준이나 근로보상금 인상 문제는 소(감호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 기관에 통보하겠다’, ‘그리고 단식 행위는 소의 규율위반’이라고 말해 14일 저녁에 모두 단식을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보안과장은 “단체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잘못”이라며 “징벌 여부는 앞으로 정할 것이다”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징벌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 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16일 직권중재 철폐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 총파업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수사와 처벌 △특별 근로감독 실시 △병원내 경찰병력 철수 △폐업 철회 △병원 구조조정 철회 △대화와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11월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파업 1백47일째를 맞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과 목포가톨릭병원(1백43일째), 제주한라병원(1백41일째), 제천정신병원(97일째)의 파업사태는 병원 측의 노조탄압과 대화거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종모]

2002년 10월 17일(목)  
제 21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돼 있으나(사회보호법 제25조), 감호소 출소자들은 보호감호처분 기간이 거의 다 끝난 시점에 형식적으로 가출소 결정이 나온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거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호감호 제도는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다 피보호감호자의 처우가 징역형을 사는 재소자와 같아 사실상 이중처벌 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이주영]

###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노숙농성이 일주일을 맞고 있다. 16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 유가족 및 사회단체 활동가 80여 명은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

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대표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사위는 진실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라며,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고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면 제2의 반민특위 강제해산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가협 김정숙 회장은 “의문사 진상조사 대상에 모든 군의문사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낮 2시경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자마자 신정학 씨(고 신호수 아버지) 등 8명이 연행됐다. 같은 날 밤 9시경에는 허영춘 씨(고 허원근 아버지) 등 3명이 또 연행됐다. 이들은 모두 풀려나 현재 농성에 결합하고 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경찰이 2차례에 걸쳐 농성자 전원을 연행하기도 했다. [범용]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결과는 모두 ‘각하’.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건은 2000년 비전향장기수 북송에서 제외된 정순택(81)씨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정 씨는 5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85년 대전교도소에서 전향서를 쓰고 89년 출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99년 4월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향 의사 철회를 선언한다. “전향을 강요 하며 계속되는 비인간적 처우와 폭력적 위협에 의해 불면증과 환청, 환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러한 증세를 고치기 위해 전향이라는 굴욕의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뒤 비전향장기수들이 대거 북송될 때, 정 씨는 ‘전향자’라는 이유로 북송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정 씨와 마찬가지로 99년 공개적으로 전향취소를 선언한 류연철 씨는 북송대상에 포함됐다. 류 씨는 출소 후 전향철회의사를 밝힌 점에서는 같았지만, ‘교도소’가 아닌 ‘보안감호소’에서 전향서를 썼다. 이것이 정 씨와 다른 처우의 근거였다.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을 거듭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2000. 9. 2.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2001년 12월 11일 제기된 정 씨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4호의 ‘진정원인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는 각하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각하였다. 형식적 요건의 미비를 내세운 ‘차기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진정을 각하한 배

경은 다른 데 있었다. 한 인권위원은 “권리구제의 실익이 있으려면 정순택 씨의 북송을 권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남북 간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권고’를 포기했다는 이 야기다.

한편, 위원회는 ‘전향철회 선언’을 이유로 정순택 씨가 다시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안관찰은 ‘사상범’ 출신자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다. 이 점에 대해 인권위원은 “정 씨의 진정취지가 북송과 관련한 차별문제였기 때문에, 보안관찰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형식주의가 도드라지는 대목이다.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의 ‘각하’ 사유도 형식요건의 문제였다. 이 사건의 진정인 정아무개 씨(39)는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93년 복권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 씨는 사법연수원 수료시 상위 5%에 해당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으나 판사 임용에서 탈락했고, ‘그것이 나이와 전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었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게 됐다.

앞서 정 씨는 혼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일종의 행정처분인 예비판사임용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혼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02. 10. 14.(월) 제27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안건>

1. 재상정: 양심적 병역거부 수령자의 행정처분 건(비공개)

2. 재상정: 알몸수색 인권침해의 건(비공개) 3. 경찰서 가혹행위 등 진정사건(비공개)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이 위 진정취지와 같은 이유로 … 2001. 4. 13.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은 2001. 12. 20.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진정인의 이 사건진정은 진정 당시(2002. 2. 14.)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권리구제절차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각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국보법 전력자를 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력’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법원에서 39세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포기한 것은 사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인권위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해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사건이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 대해 이미 구제권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 두 사건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점뿐이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구성과도 무관치 않은 결정으로 비춰진다.

두 사건 모두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된 결과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기회를 놓쳐 버렸다. 이 점에 대해 인권위원은 “인권단체들과 같이 고민해야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의제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운영규칙상 비공개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세 차례에 걸친 논의 후 형식논리를 앞세워 판단을 회피한 이번 결정은 위원회의 비겁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창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도,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 재일동포들의 국적란에 '조선'이란 기호를 일괄 기입했다. 당시 지구상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했다. 현재 재일동포 중 한국적은 52만, 일본적은 54만, 조선적은 15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선적 재일동포 중 일부는 북일수교 후 북의 국적을 취득하기 원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한반도 통일 이전에 남과 북 어느 국적도 취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지 않느냐", "남편직업이 대학교수라면 다 알텐데, 무식하게 왜 조선적을 가지느냐", "조선적은 공산주의 국적이지 않느냐", "북한은 납치를 하는 나란데, 왜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느냐", "나는 총련 활동가 아닌 사람이 조선적인 것이 제일 싫다"… 지난 9월 27일 조선적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요꼬하마 한국영사관을 찾았던 박씨는 영사 최씨로부터 일장 연설을 들어야 했다.

박씨가 조선적이 된 것은 부모의 결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조선적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박씨는 또 '한국이란 나라가 생김으로써 한반도가 2개의 국가로 갈라졌다'며 이를 인정하기 싫어 여전히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적을 바꾸라'는 영사 최씨의 일장 연설은 조선적 박씨에게 일종의 수모였다.

영사 최씨의 모욕적인 설교가 1시간 정도 이어진 후에야, 박씨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영사 최씨가 박씨에게

한 마지막 말은 "2번은 (발급) 안 해 준다"였다. 결국 박씨의 여행증명서는 2일 발급됐고, 박씨는 11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1~14일 진행됐던 '재일 조선인 서울방문 및 청년결연사업' (아래 방문사업)의 마지막 날 박씨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박씨 등 재일동포들은 이번 한국방문 기간 동안 서대문형무소, 나눔의집, 통일광장, 민족 문제연구소 등을 찾아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방문사업을 주최한 재외동포교류단체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손동주 방문기획단장은 "영사 최씨의 발언은

2002년 10월 18일(금)  
제 2197 호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여동수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정부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쟁점이 타결됐으며, 18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국 간 6차 협상에서 협정문에 합의할 전망이 높다고 밝혔다. 쟁점은 칠레산 농산물과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의 범위였다.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칠레산 사과와 배 그리고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각각 상대국에서 무관세의 예외로 하고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되 매년 관세를 낮춰 10년 안에 철폐하는 것. 이밖에 칠레측은 복숭아·단감·키위·감귤 등에 대해서도 10년 안에 관세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정현찬, 아래 전농) 이호중 정책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농민들에게 미칠 피해는? 칠레의 과실 가격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싸다. 칠레의 싼 과실들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과실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협조사부가 추정한 피해액만도 2조 원 가량이었다.

◇사과와 배는 무관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2000년에 미국산 오렌지 한 품목이 싸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과일·채소류 전반이 폭락했다. 예를 들어 만약 포도 가격이 폭락하면, 포도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전환하게 되고 그 작물이 많이 생산되면 또 다시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농촌이 파탄나는 거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갖는 또 다른 위험성은? 칠레 농업은 돌, 유니프루티 등 미국계 다국적 청과기기업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과실을 관세 없이 수입하는 폭이 커진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도 우리나라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칠레 민중들에겐 어떨지? 2000년도 말에 칠레의 금속산업노조연맹과 섬유산업노조연맹이 한국의 막강한 공산품들이 흥수처럼 밀려들어오게 되면 칠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면대하자 는 공문을 전농에 보낸 적이 있다.

◇서민들에겐 과일을 값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닌지? 처음에는 가격

이 싼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나면 가격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 일례로 94년도에 일본에서 쌀 흥보니 들었을 때, 다국적 곡물기업들은 쌀 가격을 3배까지 올렸다. 게다가 오래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쳐 안전성에 문제가 많고 건강에 안 좋다.

◇앞으로 전농의 대응은? 한·칠레 양국이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 비준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11월 13일 농민 30만명이 참여할 농민대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도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저지다. [이주영]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수원의 다산인권센터는 90년대 중반 노동상담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지역 인권단체로 자리잡았다. 다산인권센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시작한 것은 96년부터다. 이후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99년부터는 교사들을 통해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 씨는 "흔히 인권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정도로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회성 강의요청이 많다. 보통 인권에 대한 소개와 비디오를 보고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역시 다른 단체처럼 장기적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한 실업고등학교에서 정체성교육 차원에서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루에 한반씩 9주 동안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박씨는 "성적이 낮아 실업 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정체성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처음엔 교육시간이 6시간이었지만 첫날 기자들이 대거 참관하자 교장은 바로 교육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명칭도 인권교육대신 민주시민교육으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전한다. 한학년 전체를 교육한 보기 드문 시도였지만 인권교육은 올해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강의뿐 아니라 문화활동과 결합해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98년 지역청소년들과 문화제를 진행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청소년 모의법정 원고 공모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동성애, 청소년 성매매 등 인권관련 주제에 대한 글 중 우수작을 뽑아 장학금도 지원하고 학생의 날 수상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권메뉴얼 공책과 아동권협약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가정·학교·사회·노동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해 발표했다. 수원지역 청소년인권 센터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위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올 여름 다산인권센터는 전교조와 함께 인권교육을 경기도 교육청의 직무연수 과정에 넣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원미달로 강좌는 열리지 못했다. 박씨는 "단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다 다른 곳에서 무료강좌를 하는 곳도 있고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적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다행인 것은 최근 교사들의 인권교육 신청이 모여 19일 1박2일로 교사워크샵이 진행된다는 점.

박씨는 "책만 보고 인권교육을 시작할 때는 막막했는데 2000년 활동가워크샵이 인권교육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때로 교육내용이 새로 체워지기보다 제한된 것들을 펴나르기에 급급한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한동안 가둬놓았다. 앞서 경찰은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공대위가 신고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집회에 대해선 금지를 통보했다.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은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집회에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오후 5시 40분께 경찰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시도와 집회 불허, 연행방침과 관련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을 시도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91명을 연행, 서울지역 9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했다. 이들 중 3~4명은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또 같은 날 저녁 6시 20분께 명동성당 앞에선 행정자치부를 향해 이동하던 조합원들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 등에 맞아 9명이 여려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김 국제부장은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도 경찰이 제주지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서울 집회 참석을 원천 봉쇄한데 대해 18일 성명을 내고 "집회 참석을 가로막은 제주 경찰과 자치단체는 공개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영철 씨 등 제주지역 5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11명은 17일 오전 10시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나 오후 2시 서울에서

2002년 10월 19일(토)

제 21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보면서 역사가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아픔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교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과거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피해자 보상,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이 집단적인 기억의 보존에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대면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 영장실질심사제 확대·사회보호감호제 폐지·군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의 상설화 등 군·경찰·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장치의 강화와 신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진상규명' 없인 꿈꾸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벌어진 국가범죄와 인권유린을 '종이 손'을 가진 위원회의 2년여 활동으로 마감하려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진상규명 노력을 포기한다면, '기억의 의무'가 아닌 '망각의 광란'을, '재발 방지조치'가 아닌 '권력기관의 면죄부와 재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권고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는 의문사법 개정을 통해 '지금' 이뤄져야만 한다. 겨우 줄기를 잡은 진상규명 노력을 청산과 망각으로 파묻으려는 정치권의 뻔뻔한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싶다. 정치권이여, 당신들의 직무유기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재살임을, 무덤 위에 또 무덤을 만드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라.

##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17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용교 교수(광주대 사회복지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을 개선하고 준수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며 "대도시에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1개소씩 설치해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의 임성택 변호사는 "헌법 32조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노동착취와 비인간적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주요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4인 이하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과 같은 기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최저임금의 90% 삭감 지불 규정을 삭제하고 △연소노동자를 의무교육연령에서 벗어난 '16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기본법에 고용기회의 확대와 촉진, 노동법에 대한 교육 책임, 청소년근로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업교육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실습생 관련 표준협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표준협약서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지 않다"며 실업계 학생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나 연소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노동계뿐 아니라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주목했던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가 앞선다.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직업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가출청소년의 탈선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청소년을 짚값에 부려먹기 쉬운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고용기회의 확대는 아이들에게 착취당할 기회가 다양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취업해서 교육과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노동 청소년에게 어떻게 기회와 여건을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진원 부소장의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보영]

### 청송감호소 집단단식, 국가인권위 진정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 단식을 계기로 피보호감호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됐다. 피보호감호자 1백여명은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가출소 기준 완화와 근로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현재는 단식 참가자에 대해 감호소 측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지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지 17일자 참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영]

##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전국타워크레인 기사노동조합(위원장 체수봉, 아래 타워노조)이 20일부터 일요일 휴무투쟁에 돌입한다. 타워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일요일 근로를 포함해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서울·경기·대전충남·광주 전라·대구·부산 등 타워노조 6개지부 9백여 조합원들이 20일 일제히 제3유대회를 열고 일요일 휴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워노조는 "외국의 건설노동자는 주당 40시간대의 노동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이 산업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II.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98년 건설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일본 39.3시간, 대만 43.4시간, 호주 40.2시간, 미국 38.8시간이다.

타워노조는 "장시간 노동은 건설현장에서 한해에 7백명이나 사망할 정도로 높은 산업재해율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2000년 뇌심혈관 질환(일명 과로사)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수만 145명에 이른다.

타워노조는 "지난 해 27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주1회, 일요일 휴무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무원칙한 공사기간 산정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타워노조에 따르면, 건설공사기간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의 임기 등에 맞춰 무리하게 산정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장시간노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타워노조는 "일요일 휴무는 물론이고, 주휴수당과 월차휴가 등도 실질적인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공연 외 풀뽑기·청소 월임금2백달러 미달, 숙소 물도 안나와

한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원이 국내에 들어와 노예 노동에 가까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주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공동대표 김갑배 외 18인, 아래 공대위)'는 21일 아침 10시 "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나라이름) 전통예술 공연단원 10명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프리칸 빌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노엘, 양주 씨 등 10명의 공연단원들도 함께 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엘 씨 등 10명은 하루 1~2회 공연에 월2백달러의 급여와 좋은 조건의 숙식을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한국에 들어와 지난 6월 1일부터 아프리칸 빌리지에서 일을 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공연단원들은 공연 외에도 매일 식당 서빙, 청소에다 1만여평 되는 대지의 풀을 뽑고 계단을 만들고 공예품을 운반, 설치하는 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이르는 모든 노동을 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연단원들은 최저임금(월51만 원)에 못 미치는 애초 계약액 월2백달러(한화 약 24만원)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연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화 1분에 3달러, 몸 아래서 3일 쉬었다고 15달러, 청소를 깨끗이 못했다고 5달러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임금을 공제했다.

이밖에도 공연단은 전주세계소리축제(8.24~9.1)에서 9일간 공연해, 주최측이 공연료로 1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나 공연단원들은 아무런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서 열린 '통과의례 페스티벌'(10.3~10.6), 9월 말 제일은행 앞 공연에 대한 공연료도 각각 4백8십만 원과 3백만원에 이르나, 공연단은 수당으로 1달러를 받았을 뿐이다.

개다가 이를 숙소는 폐가를 대충 개조한 집으로 난방과 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화장실도 없어 인근 풀밭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고 직접 현지를 조사한 한국이주노동

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말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칸 빌리지의 최 대표이사는 21일 오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외부공연 건은) 직원이 밖에 나가서 한 거니까 공연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무 지저분한 사람들이다. 이 정도면 이들에겐 호텔 수준이다', '이들은 공연단원이기도 하지만 직원으로 온 거니까 회사가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양 소장은 전했다.

한편, 공연단원들은 현재 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지원 아래 생활하고 있고 국내의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주영]

###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아래 강원본부)의 현수막 게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이 '공중에 대한 위협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취지와 국가보안법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며 강원본부의 현수막 게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강원본부는 춘천시를 상대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춘천지법, 재판장 이현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본지 2월 1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물 내용으로 부적합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과 관련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광고물의 표현이 외관상 명백히 그 조항이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만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불허하거나 신고불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이주영]

2002년 10월 22일(화)

제 21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 아시안 게임 기간 중 언론사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문의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 중 몇몇이 선수촌을 이탈 했다는 혹시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이들의 상담을 받지 않았는지'였고, 또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선수들 응원이나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동안 인권모임을 비롯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의 참가단체들은 경기장 앞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에 다른 아닌 외국인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일인시위를 하면서 "한국의 치부를 꼭 드러내야 속이 시원하나? 당신들은 한국 사람 아니냐?"는 향의를 경찰들과 일부 시민들로부터 받으며 매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아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안타까웠던 것은 아시안게임 동안 자국 팀의 경기를 보러가느라 하루 결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쫓겨나기도 했고, 몇몇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36억 아시아인들의 축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축제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저는 베트남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많은 제 친구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대가를 치뤄야만 합니다..."며 며칠 전 이주노동자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베트남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의 나직한 목소리는 막연하게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정부는 아시안 게임 이후 미등록노동자의 증가를 이유로 집중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 34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 73%가 미등록상태인 한국의 기형적인 인력구조에서 본다면, 입국 경로가 무엇이었던 관계없이 누구든 쉽게 취업의 대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선수단 중에 과연 몇 명이 선수촌을 이탈하여 취업의 대열에 참가했는지 알 수 없지만, 26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노동자에 합류한 이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에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과다한 송출비리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연수제도의 폐지와 함께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꿈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체류기간을 주어 합법적인 신분의 노동자로 일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다.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00명,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 집단단식(10.12~14) /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처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0.18)

#### 3. 과거청산, 끝나지 않았다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 열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 기구' 설립 등 51개항 국가에 권고(10.15) / 인혁당사건 진상규명대책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법원에 재심청구기로(10.15) / 의문사 유가족 등,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2차 촉구대회'(10.16) /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총파업 계획(10.15) / 보건의료노조, 병원장 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전국10개지역 조합원 5천여명 하루 총파업(10.16) / 경찰, 공무원노조 집회 금지·조합원 연행…공무원노조, 명동성당에서 공무원조합법 저지 결의대회 강행(10.17) / 특수고용노동자 7백여명, 노동3권 보장 촉구집회(10.20) / 타워크레인 기사노조, 주당70시간 대장시간 노동 반대 일요일 휴무투쟁(10.20)

#### 5. 한반도 심장박동, 쿵쾅쿵쾅

미, 북한이 핵개발 계획 인정했다 발표(10.17) / 북 뉴욕주재 대표부, '핵문제' 관련 대화 통한 일관타결 강조(10.17) / 미, 북 핵계획 시인 관련 군사대응 배제 '외교체널을 통한 처리'와 '평화적 해결' 강조(10.17) / 미, 북한과 94년 제네바 핵협정 폐기 결정(10.19)

#### 6. 기타

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 '끼리끼리', 동성애자 인터넷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 일반인의 접속 차단시킨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국가인권위에 진정(10.15) / 민주노총, 경찰이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유출해 피해줬다며 고발(10.15) /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임박 밝혀…전농 등, '칠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22일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서울시 청역 6번 출구, 피노키오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이 휠체어 리프트의 버튼을 누르고 2~3분이 지났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정 소장 등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비장애인 20여명과 기자들이 시청역 아래로 내려갔더니, 지하철역 직원이 “불합격판정을 받아 운행이 정지됐다”라고 말한다. 4명 내지 6명이 장애인들이 탄 휠체어를 앞뒤에서 힘들게 들고 내려가서 확인하게 된 결과다. “이게 시청역에서 출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리프트예요.” 한 장애인이 말했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시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이는 시청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월 오이도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됐던 모든 휠체어 리프트는 올해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발표한 검사결과는 저첨했다. 검사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1천3백87대의 검사 결과, 8백61대가 불합격, 2백99대가 보완 지시를 받은 것. 그리고 98대는 법이 정한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안전검사를 미루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사 불합격된 것은 정지하고 보완 지시를 받은 것은 일단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연말까지 임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22일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자리에 꽂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는 장애아들 둘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정렬 소장(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은 “보조인력제도가 통합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척박한 통합교육 현장 개선의 계기,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애 교수(대구대 특수교육학부)는 “보조인력 도입은 맹목적인 보호를 벗어나 장애아동이 비장애인과 의미있는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조인력제도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유급으로 고용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30~40명의 학생을 1인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을 두는 것만으로 통합교육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한데서 같이 어울려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통합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방치되고 소외되는 것을 막고, 또래 학생과의 의미있는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절실히 차별화된 학제적 접근법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장애아를 둔 송제연 어머니는 보조인력이 배치된 통합교육을 직접 겪어보면서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아이가 …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다”며 “통합을 위한 보조인력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다면 많은 장애아들이 어려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조인력제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조인력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을 하향 조정하고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정규 특수교육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을까’, ‘한정된 전체 특수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일까’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보조인력제도의 시행이 일반학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에서도 요구된다’는 주장에도 강한 공감이 있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의 특수교육보건과 정동영 연구관은 “보조인력제도가 특수교육 예산 줄이기 방편은 아니라”며 “특수교사 확대배치와 보조인력제도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은숙)

2002년 10월 23일(수)

제 22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lt;보고&gt;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된다

<편집자주>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강대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는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의 문제를 식민지 지배 및 냉전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고, 그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해 왔다.

국제학술회의는 97년 타이완을 출발해, 98년 제주, 99년 오키나와, 2000년 광주, 2002년 2월 교토에 이어, 지난 10월 17~20일에는 여수에서 열렸다. 인권하루소식은 식민지 지배와 냉전체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국가폭력과 집단학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18일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은 냉전구조 형성의 결정적 기초다. 냉전구조의 형성으로 식민지 제3세계 국가에서 탈식민화는 좌절되고 자본주의 독재국가가 탄생한다. 이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한국위원회 이영일 사무국장의 말이다. 이번 ‘여수대회’는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 형성과 식민지 극복의 좌절 문제를 제1세션에서 다뤘다.

### 미·일 합작품, 동경재판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에 대해 전쟁의 책임을 묻는 동경재판은 침략전쟁의 책임자를 심판한 국제재판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국제검찰국은 도조히데키 등 육군군벌을 중심으로 피고 28명을 선정했으나, 여기에 천황은 제외됐다. 소련이나 호주가 천황의 소주를 주장했음에도, 천황은 피고인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었다. 일본 또

한 천황 및 황실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변호의 근본방침이었다. 결국 “동경재판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보수정치가들이 협력한 합작품”이라는 것이 혜천여학원대학 우쓰미 선생의 주장이다.

46년 개정된 동경재판의 피고 28명에 대한 기소이유에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 등이 피고들 가운데 있었으며, 중국이나 필리핀에 대한 침략전쟁은 기소 이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따라 우쓰미 선생은 “동경재판을 조선의 미국군정이나 전후 동아시아 냉전 속에 위치 지으면서 (동경재판에서) 식민지 문제를 무시한 과정을 밝히는 것은 현재에도 남아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 남한 탈식민지화의 좌절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남한에서는 식민지 직접 통치로부터 벗어나긴 했으나,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조선사회 건설은 좌절됐다”라고, “이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탈식민화의 좌절은 남한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라는 뜻.

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식민지 통치구조와의 구조적 동맹과 친일파와의 인적 동맹을 통해서 남한의 탈식민화를 좌절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남한 단독선거를 통해 이후 남한 내에서 탈식민화를 아예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친일·친미 성향의 40여개 정당·사회단체만으로 남한 단독선거가 치러졌고, 이를 단체를 중심으로 남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당·사회단체들은 모두 4백10개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강 교수는 “친일과 청산의 실패를 우리(이승만 정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자폐증적인 영터리 분석”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인 냉전체제의 결과로 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한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 대일 강화조약, 배제된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영유목 선생은 “반파시즘 진영과 파시즘 진영의 대립은 새로 출현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대체됐다”라며, “냉전체제의 형성은 의심할 바 없이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 책임을 벗겨주는 외부조건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3천5백만 사상자와 5천억 달러의 재산손실을 입은 중국은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었음에도, 가해국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의해 철저히 배제당했다. 영국과 소련은 중국이 강화회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반대는 완강했다. 결국 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게 전쟁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영 선생에 의하면,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쟁배상문제에 관해 “연합국이 부여한 적절한 배상과 기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능력이 일본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각국은 “이후 일체의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범용)

(⇒ 1면 ‘리프트’ 기사에서 이어짐)  
일방적으로 정한 법규정마저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이동권연대는 성명을 발표, “휠체어리프트 완공검사 보완이라는 편법으로 ‘장애인의 이동대란 사태’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준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23일 평등사랑변호사모임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조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호적제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기록을 장부에 공시하는 것인데, 호주와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가족단위보다는 개인별로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조 부장판사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신분등록표에는 본인의 성명·출생년월일·성별과 더불어 출생·사망·입양·친자관계·변동·혼인·개명

#### 〈호주제와 현 호적제의 문제〉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호적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일기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분상황을 표시하게 돼 있어 같은 문제가 이어진다. 결혼하면 부인은 남편 일가의 호적에, 자녀는 아버지 일가의 호적에 기재하게 돼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 이로 인해 특히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자녀, 미혼모의 자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등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한다.

등의 신분변동사유를 기록한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장점으로 "자녀의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호적에 올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에 따른 남녀불평등 문제가 없고, 적이나 신분기록을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별 신분등록표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 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자세한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의 기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가족별 호적제도에 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의 하나로 꼽았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희 변호사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일명 가족부를 현행 호적제의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호주를 없애고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행정사무처리와 검색의 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에 따라 '기준인'을 둔다. 이 변호사는 "호주제를

없애면 가족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이 점을 감안할 때 1인1적 제도보다는 가족별 편제가 현실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이효재 여성단체연합 고문은 "가족부는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구성을 전제로 해, 미혼모 가족, 독신자 가족, 동성애자 가족, 비혈연적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고은광 순 씨나 민주노동당 최현숙 여성위원장 역시 이 문제와 더불어 "가족부 제도 상 기준인을 정할 때 협의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차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부장판사도 "가족부 방식을 채택하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혼인 관계 외에서 출생한 경우 △재혼한 경우 자녀를 어느 호적에 올릴지에 대해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이효재 고문은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나아가 "법적 혼인을 않고 동거하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혼인관계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신분등록표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주영)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강제실시 길라잡이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둘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의약품 강제실시의 사례를 수집해 놓았다. 강제실시권은 특허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해 특허품의 가격을 횡溢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1년 2월 브라질 정부는 제약회사들에게 에이즈치료제인 네파니비어와 파비렌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몇 번의 협상 결과 스위스 거대제약회사 로슈는 원래 브라질 내에서 시판되던 네파니비어 가격을 40% 인하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강제실시가 효과를 발휘한 여러 예 중 하나다. (최은아)

2002년 10월 24일(목)

제 22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2201 호)

2002년 10월 24일 [2]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기독교·불교·천주교

인이나 폭력, 시설파괴 등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구금시설 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종교사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설 부족을 이유로 소수종교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유치장 알몸검신,

###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지난 4월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알몸신체검사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가문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강요당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러한 알몸신체검사를 통해 진정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감신체검사는 유치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물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여 유치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행 피의자유지 및 호송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창조)

###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22일 오후 3시께 장애인이 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훈체어 장애인 10여명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훈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을 진정접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입구와 1층 입구 앞에 버티고 서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방패를 든 경찰들이었다.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직원이나 와서 이동권연대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집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22일 저녁 국가인권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청 쪽에서 원래 경찰을 불렀던 건데, 이후 남대문경찰서 관계자가 '인권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해서 (인권위) 총무과장이 '접거한다면 막아야죠'라고 했다. 나중에 인권위가 경찰 해산시킬 테니까 진정 접수할 사람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동권연대에서 경찰들이 막은 것을 인권위가 혐의하지 않으면 진정 접수 않고 가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남대문경찰서에선 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 했다고 하고 인권위 측은 안 했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 우리는 전부 다 들어가겠다 혹은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인권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문을 막고 있었다. 이건 진정인의 방문을 막은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를 찾은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법에 정한 훈체어리프트 안전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청이나 정부기관에 더없이 실망한 나머지, 국가인권위에라도 가서 하소연하고 개선점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우선시한 것은 '조직 보안'이었다는 점은 한심하기 짜이 없다. 건물 각층에 전자출입차단장치를 설치한 것만도 모자랐던 것일까? 담을 높일수록, 국가인권위는 벗이어야 할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 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 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해온 노동·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집약한 단일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77%인 26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신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업종 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의 제한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 정책국장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나 연수취업제는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이주노동자가 일하도록 제한해, 저임금노동착취나 강제노동, 폭행 등의 인권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많이 양산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허가

제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허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6조 1항)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 협약 인원, 노동조건과 내국인 고용 의무를 다했다는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12조)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최초 2년 간 국내에 체류하며 정해진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선택해 취업할 수 있고 그 기간을 1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다. (6조 2항)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주노동자가 최소 5년간 취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7조)

또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관리를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고(3조) 상대국가와는 '인력도입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해(9조) 지금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으며(17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18조)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도록 했고(2조, 3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을 삭제해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의 폐지를 명백히 했다. (4조) (이주영)

만화사랑방

여동수



2002년 10월 25일(금)

제 22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지난 18일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에서는 한국전쟁 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강대학 모리 마사타카 평화학 강사는 지난해, 올해 2번에 걸쳐 중국 동북지역과 북조선에서 행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쟁 시) 미군의 세균전은 틀림없이 행해졌다"라고 단언했다.

모리 강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 사용됐던 세균탄은 두께가 3센치 정도의 철제로, 길이 1미터20센치, 직경 37센치, 무게 70킬로다. 4칸으로 나뉘어진 세균탄은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에 감염된, 서로 다른 종류의 곤충이나 나뭇잎 등으로 채워진다. 세균탄이 투하되면 30미터 정도 높이에서 푸껑이 열리고, 내용물들은 직경 1백미터 면적으로 확산된다.

미국의 세균공격은 52년 1~3월에 가장 심했다. 이때 중국이나 북조선엔 그 지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겨울철에 있을 수 없는 벌레 등이 무수히 발견됐다. 당시 중국 동북지역엔 72회의 세균공격이 있었고 북조선엔 8백개가 넘는 세균탄이 투하됐다는 것이 중국과 북조선의 주장이다. 미국은 특히 세균에 감염된 조개를 짚으로 싸서 북조선 지역에 투하했다. 북조선에서는 조개를 선물을 할 때나 보존을 할 때 짚으로 싸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시 미국의 세균전은 52년 이미 '국제민주법률기협회'와 '국제과학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고발된 바 있다. 7백쪽이 넘는 「미군세균전/국제과학위원회 조사보고서」는 "북조선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은 미군의 세균전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선전'이라며 세균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세균전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731부대 등에서 행한 '마루타' 생체실험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어떻게 일본의 생체실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731부대 등 생체실험 관계자들 중 단 1명도 동경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7년 일본 미군정 법무부 조사보고서는 "일본의 생물전 자료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인권 보장상 높은 중요성이 있고,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범재판에 부대원이나 나오게 되면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생물전 자료를) 전쟁범

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은 일본의 생체실험 자료를 독점하기 위해 생체실험 전범들을 의도적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또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전 731부대장으로 하여금 세균전을 지휘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균은 핵 및 독가스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도적인 병기다. 모리 강사는 △식민지 전쟁책임을 철저하게 밝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미국의 세균전에 대해 앞으로 보다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용)

##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향한 운동에 힘찬 시동이 걸렸다. 24일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 아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기존 장애인관련법이 복지서비스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장애인 차별을 광범위하게 금지할 실효성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장애인법(ADA), 호주·영국·캐나다·홍콩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등에서 보이듯,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려는 입법 경향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가 마련한 법안에서 듬보이는 점은 무엇이 차별행위인가를 상세히 규정한데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이동석 씨는 "이런 상황은 차별이구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자체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점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에 차별의 근원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장벽을 '장애'로 규정한 점 △장애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보호자 등 장애인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 점 등 법안이 환기시키는 문제는 다양하다.

법안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다. 일단 법안은 별도의 '국가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장애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특화의 필요성이 한편에 있고, 기존의 장애관련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한편에 있다.

'장애인차별에 특화된 기구신설이냐, 국가인권위의 보완이냐'는 계속적인 논쟁거리일 것이다. 또한 법안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규정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칙규정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논란거리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준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표명했다.

연구소만이 아니라 몇몇 개인과 열린네트워크 등 단체들도 몇 년간 장애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 왔다. 장애인계는 올 11월 입법추진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정부가 외국자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공투본은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안'을 4대 교육악법으로 규정했다.

외국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해산해도 투자자는 자산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70조 1항, 6항),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조 2항).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경제특구 내에 초중등및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20조),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학교기업을 설치해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36조 1항).

이날 집회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이수호 위원장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마저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공교육체계가 견접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씨는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법안은 내년 3월까지 WTO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은 교육을 상품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초국적자본에 의해 교육주권이 파기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모)

###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겐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편 종교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대체교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가 표면적으로 이 때문에 간단히 공격받을 제도는 아니며, 학생 차지를 통한 종교활동의 활성화나 대체교과의 제공을 위한 조치 등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이런 기본권에 대해 무심하고 게으르다는 데에 있다.

'선택의 자유가 곧 권리다'는 논리는 횡포이다. 그것은 입시라는 결투를 위해 자유롭게 무기를 구비할 수 있게 해주는 말과 같다. 교육의 권리는 시장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물건을 사듯이 고를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위 연구서의 주장은 건너뛰고 있다. 교육의 권리를 말할 때 핵심 전제는 "기회균등의 기초"이며,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핵심으로 한다. 유엔에서 그간 한국 정부에 던져온 문제제기에서도 이점은 확인해 드러난다.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의 가중과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외',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우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게 무상의무교육 제공 단계가 낫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한 유엔의 지적사항이었고, 그 결론적 권고는 '공교육의 강화'였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고교평준화제도' 정도의 수준을 경계로 삼고 거기서 더 후퇴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예산의 20%를 교육을 포함한 사회부문에 할당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학력·직업 간 임금격차 혜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합되도록 학교규율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의 민주적 편성과 운영을 통해 기회균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인권규약 준수이다.

날씨가 춥다. 곧 입시한파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시험대기소'에서 긴 겨울방학을 사교육과 어울려 지낼 것이다. 이것이 국제인권규약과 충돌되는 우리의 모습이다.

2002년 10월 26일(토)

제 22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주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관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여성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임 씨는 경북대 L교수, 동국대 김모 교수, 죽암휴게소 박모 씨, KBS 노조 강모 씨, 제주 우모 지사, 소설가 박모 씨 등 15건의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대부분 가해자의 고소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나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심지어 1월 노동청에서 성희롱 판정까지 난 죽암휴게소 사건의 피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6월 구속되기도 했다.

박선영 교수는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공인과 관련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그런 의혹의 제기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것으로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 관련, 조국 교수는 "우리 형사절차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품행이 방탕한 자와 순결하고 정숙한 자, 두 유형으로 나눈 뒤, 피해자의 상당수를 전자로 간주, 이를 의심하고 추궁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실 남성중심적 관념에

해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과 성향이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법원이 전제하는 '평균인'으로서의 '합리적 인간' 기준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선 남성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성희롱 판단에서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다"며 "성폭력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 여성'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지난 22일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이 아동성폭력 피해자기족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첫 논의로서,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씨는 아우성 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2백60여 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강은영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8.6%에 이르고 이중 친족이 36.3%, 동네사람이 21%를 각각 차지한다. 강 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학대 사실은 은폐되고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동성학대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친아버지에 의한 성학대는 29.4%로 아내의 가출이나 이혼 등의 결혼문제나 실직, 소아기호흡, 음주 등을 성학대의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학대하는 퇴행적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후유증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신체적 후유증 외에도 우울·분노·공포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을 동반한다. 성적후유증으로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성에 대한 공포와 혐오, 이성거부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증세는 가출·매춘·약물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폐론 폭력적이거나 성학대를 하는 가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동성학대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6세 미만 아동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하는데도 그다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98년 홍제동 유치원 운영자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4년 만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기족모임의 대표 송영옥 씨는 "지난 4년 간 증인신문이나 대질신문으로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20여 차례나 시켜 아이뿐 아니라 가족들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외에도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을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 영상물로 촬영하게 해 불필요한 진술 반복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의 증인신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조사나 법원 신문 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에 일정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심각한 수준의 과밀 수용, 금치징벌과 계구 사용의 남발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소·교도소·구치감(서울지검) 방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 과밀수용

조사결과, 성동구치소의 경우 3.45평 방에 9~11명이, 여성의 경우 4.35평 방에 16명까지 수용돼 있었다. 서울구치소는 3.45평 방에 평균 9명에서 많은 경우 14~15명까지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 대비 조사 당시 수용인원을 보면, 서울구치소는 수용인원이 정원보다 5백 명 많은 3천7백명이었고, 영등포교도소는 정원 1천4백명을 넘어선 1천6백 31명, 성동구치소는 정원 1천9백30명을 넘어선 2천93명이 각각 수용돼 있었다. 심지어 안양교도소의 경우 독거 수용되기 위해 고의로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수 변호사는 "조사 결과 서울 인근의 구치소, 교도소는 모두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며 "행형법 제11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는 혼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수용은 예외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번호 7618848

2002년 10월 29일(화)

제 22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한다"고 덧붙였다.

### 계구 사용 남발

수갑·포승·사슬·안면보호구 등 계구 사용도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징벌 경험자 16명 중 10명이 조사기간이나 금치처분 집행 시 계구를 착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계구 착용기간이 2주 이상이었던 응답자가 8명이고, 이 중 2개월 이상 착용했던 사람도 4명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실질적으로 징벌집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이므로 행형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계구 사용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행형법 제14조 3항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스스로 금지한 구치감(검찰청 내의 대기감방) 내 계구 사용도 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000년 3월 29일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해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65명 중 '계구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17명, '경우에 따라 달랐다'고 답한 사람이 9명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청원 및 소장면담 등 수용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의 운영, 수용자의 건강 및 의료문제와 관련된 실태도 담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교정규칙 및 예규집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달 11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는 교정예규 등을 공개해 수용자 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미비한 규정을 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

####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세상에는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사이의 싸움이 늘 있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개하려는 사람들의 싸움도 꽤 같은 것이다. 글자를 아는 자들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여 권력을 유지해 온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매우 간단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이기면 세상은 밝아지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득세하면 세상은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어두운 세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건강했던 사람이 등산을 갔다, 발을 헛디뎌 죽었다". "어떤 사람이 중앙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다". "건장한 젊은이가 군 생활을 이기지 못해 총기를 사용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경찰에 쫓기다가 밤에 저수지 근처를 지나다 실족하여 의사하고 말았다". 우리는 그 동안 무수한 죽음을 보아왔다. 한, 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단 죽음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왔다. 한, 두 문장의 설명이 전부였다. 더 알려고 해서도 안되고, 더 알 수도 없는 시대임을 그대로 증명하는 사건들이었다.

이제 알고자 할 수 있고, 알 것은 알아야만 하는 시대이다. 우리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겨났을 때 모든 감추어진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일방적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진실을 밝히자면 많은 권한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과 밝히려는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세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이다. 당장에는 이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진실을 밝히려는 첫 걸음인 어둠의 세력에 제동을 건 장치는 결코 풀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건 신호였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야만 한다. 어두운 무리들의 독주에 건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은 어둠 속의 한줄기 빛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왜 그랬는지도 웃날에는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결단을 해야된다. 어둠의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밝은 개명천지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진영종,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1. 막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주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인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본대책 촉구(10.22) /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교육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요구(10.22) / 장애 우권의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10.24)

#### 3. 지구망폐, 두고 볼 수 없다!

바웬사 등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5명, 이라크전쟁 반대 공동성명(10.21) / 미 결의안초안, 이라크 침공 승인하는 것으로 여겨질 문구 있어 러·프 강한 반발(10.22) / 부시, '유엔 결의없이 독자 동맹결성 이라크 문제 대처' 밝혀(10.26) 프, 무력사용 자동발동되지 않는 독자 결의안 제출 경고(10.26) / 미·독·덴마크·스웨덴 등 세계 곳곳, 미의 이라크 침공 반대 시위 열려(10.26)

#### 4. 살인극으로 막내린 모스크바 극장

체첸반군 40여명, 모스크바 한 극장 난입 7백여명 인질 잡고 군·경과 대치…1주일 내 러군의 체첸 철수 요구(10.23) / 러 특수부대, 체첸반군 인질극 독가스 진압…반군 50명 사살, 인질 118명 대부분 가스증독사(10.26)

#### 5. 갇힌 자에게도 인권이 있다오

국가인권위, 유치장 알몸신체검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결정(10.22)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인근 교도소·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 6. 기타 :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로

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제안(10.23) / 명동성당, 보건의료노조에 '공권력 투입' 경고(10.24) / 민주노총 등, 노동허가제 관련 법률(안) 입법 청원(10.24) / 의문사위, 구사대 폭력 관련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에 책임 있다'(10.2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84년 허원근 일병의 죽음과 관련, 국방부는 의문사위에 의해 밝혀진 '노아무개 증사의 총기오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폐에 가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사건이 자살'이라는 이전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 「허 일병 사망사건 특별진상 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 중장, 아래 특조단)은 29일 아침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사발표를 통해 "중대 내무반에서 새벽에 노00 증사의 총기오발 상황은 없었다"라고 단정 했다. 앞서 지난 8월 의문사위는 당시 노 증사가 새벽 술자리에서 중대장과의 말다툼 끝에 중대장 전령이었던 허 일병에게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특조단은 "당시 중대 내무반에 있던 9명이 '총기 오발사건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중 노 증사를 포함해) 중대 본부요원 5명의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총기오발 사고 발생이 없다는 진술에 있어서 진실반응을 확 인"했다고 밝혔다. 또 '노 증사가 오발했다'고 증언한 참고인 전아무개 씨의 진술에 대해선 △당시 중대원들과의 대질조사에 일체 불응하고 있고 △의문사위에서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문사위는 낮 2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질조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 씨는 지금까지 군 동료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의문사위에서도 다른 중대원들과의 대질을 기피했다. 따라서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또한 18년 전의 기억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의문사위의 판단이다. 거짓말 탐지 결과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도 "장담 할 수 없다"며, 18년 전 사건을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 "진실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결국 사건의 은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중대원 9명의 진술이 특조단 발

2002년 10월 30일(수)

제 22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클릭! 인권정보자료

###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박옥순 (중앙대 사회복지학 전공,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함께 나눔팀장) / 2002년 6월 / 90쪽

장애인인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가 개발됐다. 이 자료는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순 씨가 발표한 석사논문으로, 2000~2002년 4월까지 총 7백49개 상담 내용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분석해놓고 있다.

박 씨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인권과 연관된 유엔 사회권·자유권 규약의 조항과 미국, 일본 등의 차별금지법 등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15개 대분류, 37개 중분류, 89개 소분류로 구분한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실태를 근간에 둔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지난 10여년 간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살펴보면, 정보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권침해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권, 가족권, 접근권, 여성장애인의 권리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최은아)

##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립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정부법안(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끝내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감행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의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내용에 대해 관련 상임위의 검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조합법안)'은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상태다. 주5일근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아래 근기법 개악안)은 30일 아침 10시 환경노동위의 법안 심사소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2시부터 열린 3대 악법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주5일근무 도입 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웃을 입은 노동법 개악안'"이라며 "이번에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휴일이 줄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가 하면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올린 공무원조합법은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되고, 단체협약체결 권한도 없다"며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 더러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

했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전국이 경제특구 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라며 우려했다.

"실제 상황입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이같은 말로 3대 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환기시켰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민주노총이 말뿐, 실제 투쟁은 안 할 거라고 말하는데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 악법 통과를 막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소속 단위노조별로 11월 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집회 후 민주노총은 3대 악법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면담 투쟁을 진행했으며,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화학섬유연맹과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7백여명은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주영)

###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힐 정도다.

또한 법안은 공무원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11조 1항),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해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제외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찬)는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조합법안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하재오 서울시청 지부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4일과 5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받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공무원조합법안 폐지 입법청원을 낸 한편,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공동발의로 공무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주영·최용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의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기로

지난 5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기관의 직무소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리프트는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직무소홀"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산역 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온 서울시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발산역 사고와 관련, 장애인들은 '서울시측의 책임인정'을 요구하며 39일 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인권위의 결정은 장애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 그러나, 인권위가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 측에만 책임인정과 배상을 권고한 데 대해 장애인들은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의동권연대는 "지하철의 설치와 운영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서울시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동권연대는 인권위측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며 "인권위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한 적절한 권고안을 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조]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아래 전교조)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차별"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9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은 다른 교원들이 다 받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2000년도부터 실시된 교원성과상여금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어렵고 교원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올해엔 능력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교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됐다. 그러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3천7백9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직위제·대기별령자·개인적 휴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간주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대해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적 휴직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용을 적극 보장하는 법정 휴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휴직자 또는 직위제·대기별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구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이제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라고 좋아했다"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급을 받지 못한다니 허탈하다"라고 밝혔다. 지 선생님은 6월초부터 8월초까지 출산휴가를 두 달 쓰고 8월말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 중이다.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성과급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조치가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중앙인사위나 교육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올해 문제를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02년 10월 31일(목)  
제 2206 호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침해자의 권리 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인권피해를 진정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게 돼 있는 것이 일반 소송절차의 원리다. 현재 인권위에서도 입증의 책임은 진정인에게 있다.

이를테면, 교도소에서 눈을 다친 재

소자가 교도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설명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면,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눈을 다쳤다는 사실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 모든 피해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피진정인 즉 가해기관으로 지목되는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의료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은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한 조사권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설립 이후 9월말 현재 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2천7백86건. 이들 진정사건 중 경찰·검찰·교도소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2천2백62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81%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진정인의 위치가 피진정기관에 비해 정보수집과 사실입증에서 훨씬 열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자료와 정보가 집중된 국가기관에게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인권보장을 했다는 사실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통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밝히게 하는 것

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 혹은 진정인의 입증책임 완화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기소율이 1~2%로 극히 낮은 것은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피해사실은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인권침해 사건이 많은데,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피해사실 조사에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진술·출석 요구 이상을 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이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권한이 한계적이다. 이때, 피진정기관이 증거를 없애서 입증하기 어렵거나, 인권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인권침해 혐의가 있다는 개연성이 인정돼도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현행대로라면 다수 진정 사건이 기각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이처럼 인권위의 제한적인 조사권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입증책임 전환의 예는 국제인권절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4조2항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청원하는 경우, 당사국에게 인권침해 사실 여부 및 적절한 구제조치를 했다는 진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많은 진정건에 대해 인권침해 개연성이 있어도 입증이 어려워 구제조치를 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적극 타개하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나 고용주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근예]

##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문 : 진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도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기관 내지 관련기관에 그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진정기관 등의 입증 내용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진정인에게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고발 및 징계의뢰는 신중하게 해야한다.

△문 : 피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면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답 : 국가정보원, 경찰, 교도소 등 소위 권리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위의 입증 내지 소명에 있어서도 상당정도 탄력을 얻어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의 조사한계로 구제불가한 사건에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인권신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문 : 입증책임 전환 논의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은?

=답 : 현행법 아래서 입증책임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명문화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 : 고근예]